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예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NSL1.26

NSL1.26

한국인권단체협의회

87-1-1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KOHRNET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1995. 11. 22~24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KOHNET)

해방 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일시 : 1995년 11월 22-24일

장소 :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일정표

제1일 (95년 11월 22일)

환영만찬

시간 : 오후 6:00 - 9:00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새벽의 집>

제2일 (95년 11월 23일)

기조연설 1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 NGO의 역할

- 로스 다니엘스 Ross Daniels,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주제 1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아태지역 국가안보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주제 2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전세계 인권운동가와 함께하는 민가협 <목요집회>

시간 : 오후 5시 - 7시

장소 : 명동성당

특별이벤트 : 국제 인권운동가의 0.75평 감옥체험

제3일 (95년 11월 24일)

기조연설 2 비상사태하에서의 인권보호 - 국제기구의 감시
- 레안드로 데스포이 Leandro Despouy, 유엔 비상사태 특별보고관

주제 3 : 개발독재와 인권 - 아태지역의 경험

주제 4 : 개발독재와 인권 - 나라별 사례연구

주제 5 :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 아태지역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략

폐회만찬

시간 : 오후 18:30 - 21:30

장소 : 아카데미 하우스 <대화의 집>

차례

일정표 3

일러두기 8

기조연설 1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 NGO의 역할 11
로스 다니엘스 Ross Daniels, 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 호주

기조연설 2 비상사태하에서의 인권보호 - 국제기구의 감시 22
레안드로 데스포이 Leandro Despouy, 유엔 비상사태 특별보고관 / 아르헨티나

주제 1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아태지역 국가안보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발표 1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 33
오재식, 한국사회교육원 원장 / 한국

발표 2 국가안보 국가에서 인간안보 사회로 - 일본의 관점 42
킨히데 무자코지 Kinhide Mushakoji 교수, HURIGHTS 의장 / 일본

발표 3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제 NGO의 관점 48
에릭 소타스 Eric Sottas, OMCT/SOS Torture 소장 / 제네바

발표 4 아시아 국가보안법 - 국가안보와 민중안보 56
빅토르 카루난 Victor P. Karunan 박사 / 태국 (인도)

발표 5 아시아의 국가보안법 - 사회적 병리 현상 67
바질 페르난도 Basil Fernando, 아시아인권위원회 (AHRC) 소장 / 홍콩 (스리랑카)

질의응답 및 토론 75

주제 2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발표 1 미국인이 본 표현의 자유, 공포 및 국가안보 89
마가렛 블랜차드 Margaret A. Blanchard 교수, North Carolina 주립대학 / 미국
- 발표 2 국가안보,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원칙들 100
- 요하네스버그 회의 결과
산드라 콜리버 Sandra Coliver, Article 19 / 미국
- 서면토론 블랜차드와 콜리버의 발표에 대한 의견 113
조용현 변호사, 민변 / 한국
- 질의응답 및 토론 117

주제 3 : 개발독재와 인권 - 아태지역의 경험

- 발표 1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29
박홍규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한국
- 발표 2 개발독재와 인권 - 노동자 인권과 APEC 148
로버트 리드 Robert Reid, 아태노동자연대회의(APWSL) / 뉴질랜드
- 질의응답 및 토론 153

주제 4 : 개발독재와 인권 - 나라별 사례연구

- 발표 1 권위주의적 문화와 국가보안법 - 태국 사례 157
자란 코사나누드 Jaran Kosananund 교수, Forum Asia, / 태국
- 발표 2 1950년대 대만의 백색공포 - 허구적 국가안보논리와 인권 유린 169
림슈량 林書揚, 대만노동인권협회 / 대만

- 발표 3 전복활동금지법과 형법 - 동티모르 사례 181
아키히사 마츠노 Akihisa Matsuno 교수, 오사카 외국어대학 / 일본

- 발표 4 국가보안법 : 민주주의의 위협 - 필리핀 사례 189
르네 사르미엔토 Rene Sarmiento 변호사, 필리핀인권운동협의회(PAHR) / 필리핀

질의응답 및 토론 192

주제 5 :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 아태지역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략

- 발표 1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의 현실과 전망 203
-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의 진전을 위한 전략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국
- 발표 2 인권 '이념'의 발전과 실천 215
세실리아 히메네스 Cecilia E. Jimenez 변호사, 필리핀인권운동협의회(PAHR) / 필리핀
- 발표 3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224
- 유엔 국가보안법 특별보고관 임명 운동을 제안하며
제임스 실크 James Silk 소장, 로버트 케네디 기념 인권센터 / 미국

질의응답 및 토론 229

참가자 소개 및 연락처 241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주소 252

일러두기

1. 본 자료집은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가 국내의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주제로 95년 11월 22일~24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한 아태지역 국가보안법 국제회의에 발표된 글과 토론을 수록한 것입니다.
2. 서울 국가보안법 회의는 지난 93년 6월 비엔나에서 “아시아지역 국가보안법하의 인권침해”라는 주제로 열렸던 아태지역 국가보안법 워크샵의 후속사업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3. 한두 편의 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번 회의를 위해 새롭게 쓰여진 글입니다. 시간 제약상 모든 발제문이 구두로 발표되지는 못했지만 자료집에서는 발표라는 제목하에 수록하였습니다.
4. 질의응답과 토론의 경우, 녹음 상태가 좋지 않거나 통역문제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5. 영문 자료집 또한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6.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신 모든 분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자료집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역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죽어간 생명,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모두에게 위안이 되고 아태지역에서 국가안보를 구실로 한 인권침해가 종식되는 날을 앞당기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6년 9월

기조연설

1.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NGO의 역할
2. 비상사태하에서의 인권보호-국제기구의 감시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 NGO의 역할

로스 다니엘스 Ross Daniels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우리 인권활동가가 이곳 서울에 모여 탈냉전 시대의 인권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상깊은 변화의 징표이다. 본인이 국가보안법과 인권에 관한 이 세미나 개막식에서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하여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과거 10년은 특히 아태지역에서 인권운동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민중의 힘'은 강력한 인권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중의 힘이 마르코스 정권의 축출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마르코스 축출이후 수년간 필리핀 정치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실망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은 분열을 뛰어넘어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여전히 강합니다.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그리고 한국에서 소규모 그룹들은 혹독한 탄압에 맞서 사회적 인 토대를 마련하였고,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인권운동, 특히 국제적인 인권운동에 대해 폐쇄적이라고 믿었던 국가에서도 주요 논쟁과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에서는,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독자적인 그룹들, 언론인들과 그밖의 사람들이 숫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기 때문에 탄압과 고립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1989년 북경 천안문 대학살 이래로, 인권 논쟁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지식인들은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탄원서에 서명하며 인권침해를 허용하는 입법에 반대하는 활동가 대열에 동참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러한 용감한 사람들의 투쟁에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예고된 냉전의 종식으로도 일부 사람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떤 '질서'가 출현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

는 동안에 전략가들과 인권활동가들은 하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강화하는 복잡한 연대를 해야 합니다.

아태지역이 예전과 다르게 지구적 차원에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아태지역의 정부들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태지역의 민간단체(NGOs)들은 지역내 많은 정부들의 점증되는 독단적인 권력 행사에 대응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제력 향상과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으로 세계의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21세기를 태평양시대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태지역은 지난 20년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아태지역의 평균 성장이 3.7퍼센트에 이르렀으나 OECD는 2.7퍼센트였습니다. 아태지역은 전세계 공업생산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아시아 지역내의 교역과 투자의 흐름이 증대됨에 따라,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통합된 무역공동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 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전략적인 세력 균형의 전환에 수반된 것이었습니다. 냉전의 종식으로 초강대국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난 지역 국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가 국내외적으로 의심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의 초강국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적 지도력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경제와 정치적 이해속에서 새로운 상호보완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전략적 변화로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무역 마찰을 조정하고,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태평양에서 실시한 핵실험에 일치된 반응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지역적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 연합(EU)과 같은 기구들이 지역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중국, 일본 및 남한을 포함한 제1차 아시아-EU 정상회담(ASEM)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이 UN 혹은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광범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표결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SEAN 및 남아시아에서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의 발전과 APEC은 아마 이러한 새로운 지역주의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APEC은 1988년에 시작된 정부들 사이의 느슨한 협의체적인 모임으로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장벽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입장을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년 전에 이들 아시아 태평양 지도자들이 아태공동체(Asian-Pacific Community)를 만들기 위해 회동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ASEAN과 SAARC도 여타 국가들로부터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화(grouping)의 전략적 논리는 그 국가들이 협력적인 구조를 통해 서로의 차

이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작은 경제권이 개별적으로가 아닌 다자간 방식으로 거대한 경제권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론적 근거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경제와 정치적 이해의 공동의 땅에 이들 지역 국가들을 묶으려는 시도에서 이들 국가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본질과 이들 국가들이 서로 연관을 맺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공동체들이 정부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경제권을 연결하듯이, APEC 공동체는 민족들간의 이해를 증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싱가포르의 외무장관 비셔 마부바니(Vishore Mahubani)가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에서 이런 융합(fusion)이 아태지역 성공의 비책이라고 서술한 것처럼 동양적 가치와 서양적 가치를 연결한 것입니다. 전후 시기의 일본 사회는 이런 유형의 고전적 예입니다.

성공한 모든 공동체는 근본적인 가치들을 공유합니다. 이 공동체는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 방법을 모색합니다. 공동체의 관계들을 규정하는 것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아태지역의 국민들이 아시아와 태평양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치적 선택에 참여하고 역할을 하며 우리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우리의 견해가 반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합니다. APEC, ASEAN 그리고 SAARC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정부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시아와 태평양의 민중입니다. 공통의 가치들이 개발되고 상호 강화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이들 가치들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공유함으로써 강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적 통합을 강화시킴으로써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각 문화 전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에 의해서 지지되는 통합을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그들의 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듯이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NGO들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활동의 초점인 인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과 상호의존적입니다. 아태지역에서, 비록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 복잡하게 얽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관심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다양한 전문 분야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들 분야들은 상호관련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며 지역의 공동된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을 상호보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분야의 공동된 지역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만드는데 협력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모든 부문에 이 메시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民과 民의 연관성과 관계를 심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 연계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전 영역으로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종합적으로 공통의 관심사가 토론되고, 다양한 관심사의 상호의존성이 반영되는 해결책과 제안을 발전시키는 방향

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유지,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률가, 의사, 노동운동 활동가, 환경 운동가 사이의 연계를 더욱 촉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계는 기본적으로 협력을 증진시키고 서로를 돕는 기회를 창출하며,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가치를 만들고 강화시킴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중심이 바로 사람이라는 점을 정부와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인권과 자유의 보편성과 그들 사이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거듭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수임사항(mandate)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핵심이 되는 특정한 권리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권리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국제앰네스티가 옹호해온 인권 침해의 희생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동포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활동했다는 이유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발전권에 관한 UN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전문에는 제6조(3)항에서 “모든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개발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희생자, 혹은 그 위협에 있거나, 투옥, 고문, 약식재판 혹은 자의적 사형집행, 또는 ‘실종’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개발에 관한 권리에 대한 기회가 없거나 전면적인 향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완전하게 참여할 권리와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시아가 그 경제와 무역 통합으로 밀고 가는데,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즉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개인과 민족들이 그 변화 과정에 전면적으로 동참할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민간단체들은 정부 조직과 그것보다는 더 넓은 시민사회 사이에서 일합니다. 민간단체들은 국제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책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사회·경제·환경적인 쟁점과 과제들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고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강력한 정치·경제적 세력으로 나타나면서 이와 함께 그러한 국가들 내에서 사회적 조건을 개선시키고 인권과 같은 쟁점들을 진전시키는 큰 잠재력을 지닌 NGOs들이 집단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북경 여성대회처럼 최근에 열린 회의에서, 우리는 민간단체들이 국제적인 문제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사회에서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수천 명의 여성들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 말고도, 우리는 각 나라에서 민중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를 실행하는 실천적 제안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정부가 시민들과 공유해야 할 의무와 책임들을 상기시켰습니다. 상이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함께 모인 이 회의는 NGO운동의 기초가 되는 힘과 여러 사회 속에서 중대하는 NGO운동의 적합성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행동은 1993년 비엔나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민간단체는 전세계 청중들에게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공통의 이상을 공유하고, 동반자로서 동등하게 서로를 이해하며, 세계를 함께 소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엔나 대회의 NGO 포럼을 계기로 나는 우리가 함께 일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느낌과 정신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정부들이 인권을 촉진, 보호, 지원하는데 민간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이 사회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민간단체로부터 필요한 정보 및 협력을 구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위협이나 간섭없이,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권 침해는 집단행동만으로 구제될 수는 없습니다. 인권 증진을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는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을 수용하고 이들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분야에서 2010년/2020년까지 자유무역을 달성할 것같은 야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권 분야에서도 이 같은 혹은 이보다 더 나은 목표와 연관시키지 못하는가? 2010년까지 자유 무역을 달성할 정도라면, UN의 인권기준을 모두 비준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제 인권기준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여러분은 국가의 발전과 방향에 공헌할 몫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수단으로서의 종이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들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우리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한 방법입니다. APEC은 인간자원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을 통해 아태 지역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투신해왔다. 인권 교육과 증진은 이것의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에게 인권은 아태지역에 건설하고자 하는 무역과 투자의 합법적인 토대입니다. 아태지역 내에서 경제와 무역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번영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한 부분이지만,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경제 발전은 사회, 시민 및 정치 발전과 손을 맞잡고 가야만 합니다. 이것들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각각의 발전을 위한 공통의 기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충을 직업 박탈의 두려움 없이 털어놓을 메카니즘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작업장에서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부, 기업, 노조, 노동운동단체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민간단체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태지역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이런 비전을 성취하는데 모든 공동 노력을 벌이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인도 이 문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강화된 법치, 투명성과 법제도의 예측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시민 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윤리적 관습을 의식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그들은 노동조합과 정부와 함께 일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와 정부 간의 어떠한 관계에서도, 우리는 정부가 고용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같은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보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협약을 비준하고, 아동 및 최수 노동과 관련된 협약들이 존중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업들에게는 각 사업장에서, 이런 정책과 관행이 존중되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정부들은 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는 인권에 대한 대안적인 아시아적 인권관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인권기준을 아시아의 특수 상황에 맞게 재단하고, 인권을 국제적인 문제가 아닌 국내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경제 발전과 관련된 권리들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취급됩니다.

아시아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 대한 논의가 이 지역 대부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출수는 없습니다. 인권과 관련한 문화적 상대주의는 결국 더 심각한 인권침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 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민간인권운동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993년 방콕 인권 선언과 1994년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민간단체들은 지역을 넘어 인권의 보편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했고 상대주의적 관점을 근거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민간단체 운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상호의존적이라는 것, 특정 아시아 정부에 의해서 취해진 경제개발정책이 인권침해를 증가시켜 왔다는 것, 그리고 일부 서방국가들이 인권침해를 방조하거나 돕는데 일조했다는 것등이 그것입니다. 혹자는 인권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말하는 아시아 정부들에게 유화적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장한 반정부 그룹을 옹호합니다.

아시아의 인권운동은 최근 10년 동안에 성숙되었습니다. 지하에서 활동하거나 '공산주의자' 혹은 '반민족주의적'이라고 비난받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모색하던 수년 동안의 시기를 지나, 인권운동은 목적의식과 분명한 역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시아의 인권운동은 반대가 허용되지 않았던 곳에서 반대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찰과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왔으며 정부가 국제적인 기준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태지역의 인권운동은 위협과 괴롭힘속에서도, 때때로 여론을 이용한 적대감에 직면해서도 인권침해에 반대해서 싸우는 인상적인 활동의 기록을 쌓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에서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변화로부터 세가지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는 첫째, 점증하는 지역통합으로부터의 도전, 둘째, 인권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공격으로부터의 도전, 셋째, 인권단체의 합법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회의장에서 행한 연설

저는 우선 이 회의를 준비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리 연설문을 배포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신세계 질서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인권운동과 민간인권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거대한 주제이고,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연설이나 이 회의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지구적인 전망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회의이므로 서두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권 현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오사카에서 한국 인권단체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박창희(63세) 교수가 북한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현재 투옥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어제밤에는 이 자리에서 44년 동안 수감되었던 남한의 김선명씨와 33년 동안 수감되었던 대만의 림슈량씨가 서로 악수를 나누며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77년 동안의 투옥기간을 상징하는 악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는 자주씩 수건을 쓰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석방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리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투옥되어 있으며, 지난 4년 동안은 의자에 앉혀 놓고 움직이면 구타를 당하는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오신 여러분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희생당한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서로 다른 나라, 단체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이런 투쟁의 핵심적인 초점이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벌여온 인권 투쟁은 인권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시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권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권의 행사가 경제발전에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치·사회·문화적, 시민·정치적 권리들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종합적인 그리고 충분한 보장이 없이는 인간의 잠재적 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인권 드라마는, 인권 투쟁이라는 것은 오늘날 변화된 새로운 정세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투쟁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억압자들이 그들의 억압을 공신력과 정당성 없이 수행한다는 것이고, 인권 피해자들이 그러한 정당성과 공신력의 부재에 대해서 항의하고 싸운다는 것이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인권운동은 수백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말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상황의 핵심이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명한 인권운동은 언제나 그러한 맥락을 이해하면서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이 우리 인권 투쟁에 여파를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핵심적인 인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저는 동시에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그러한 제목에 대해서 신중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수백만명에게 새로운 세계질서란 없습니다. 실업자들, 영양실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신경제 국제질서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경제질서라는 것은 민간단체들이 연대해서 세계질서의 정당성을 거부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통계를 보아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질서라는 것이 새로운 세계를 서술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두 초강대국 사이에 존재해왔던 세력균형이 무너지면서 국가 권위가 인간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정부외에 인권침해나 인권문제에 관해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가들의 의도나 활동에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무장투쟁의 횡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런 무장 갈등은 극히 일국 내부의 충돌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한 내부 갈등이 엄청난 인권침해를 가져 왔고, 특히 여성, 아동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가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근본주의가 아니라, 근본주의라는 이름에 내포된 어떤 측면들, 즉 민족주의나 종족주의, 또는 종교와 연결된 근본주의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주의는 분열과 차별을 낳게 합니다. 10년이나 15년 이전에 우리는 종족주의 또는 민족주의의 근본주의가 유럽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 소련의 몰락과 함께 세계 정세가 핵심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에 있었던 'APEC 민간단체 회의'에서도 분명했습니다. 그 변화는 현 세계가 한 가지 모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역자유화, 경제성장이라는 그런 모델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지배적인 경제 모델이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빈국과 빈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주변화된 계층, 사회 저변층에게는 많은 인권 침해를 가져 온다는 점입니다. 국내적 난민, 국제적 난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까지 발생한 여러가지 내부 갈등, 민족 갈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정보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보처리 역량이 발달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특정 국가의 상황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량이 더 증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권운동 진영은 자신의 목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국내, 지역간, 그리고 국제적인 민간단체들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닥친 3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아태지역의 인권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상황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도전은 '권리는 문화적인 특수 상황에서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는 서로 다른 권리체계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많은 정부대표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대표적인 정부들입니다. 이 지역의 정부들로부터 들은 인권에 관한 여러 보고에서 이런 주장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주장에 반대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남미에서 문화적 식민주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화가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부정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 때문에 여성에 대한 성적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권의 희생자들이 아니라 항상 정부 당국이 그리고 관료들이 그런 주장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정부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만 제기됩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정부들은 전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헌법이나 그들의 법률들이 국제법과 별로 상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여러 가지 국제 규약들을 비준한 바 있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 국내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전제하더라도, 이 주장은 아태지역의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태지역의 민중들은 이 주장이 넌센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사회의존적이며 불가분적이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당성의 논리에 도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아태지역에서 인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대단한 도전입니다. '방콕 인권 선언'으로부터 우리의 출발점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아 정부들의 이러한 주장이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두번째의 상황은 정부들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나라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이 경제발전이 따른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 down effect)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 발전이 완전히 도달하기 전에도 시민·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이 지역에서 큰 문제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인권의 불가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많은 정부들은 '우리는 경제안정을 위해서 자유를 일정한 부분 제약해야만 한다.'라

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 논리를 여러 가지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이고, 경제발전의 일부 소수의 특혜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경제사회적 권리와 시민사회적 권리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이 구속되고 투옥될 때마다, 동료들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되고 구속되었을 때, 거기에는 시민사회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 지도자들이 실종되거나 구속되었을 때, 토지의 권리, 어업의 권리, 이런 류의 권리들을 주장하다가 구속되었을 때, 역시 이 상황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연관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며칠전에 캔사라 위와 씨가 당한 사건이 이 연관성을 잘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다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쪽의 권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가해 사례입니다. 지난 주에 APEC 정상회의를 갔을 때, 차량을 통제된 거리에서 호화스러운 차를 타고 거리를 질주했던 정상들이 앉아서 서로 쳐다보고 하는 말이 '이것은 정의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경제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주의 정치인과 대화를 했는데,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APEC은 권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강의를 듣는다면 낙제시키겠다.'라고 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로 전면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동력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서 싸워야 합니다. 정부들의 이런 강력한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깨기 위한 싸움을 전개해야 합니다. 아태지역 뿐만 아니라 APEC 블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활동이 정의와 인권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간단체의 역할입니다.

세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국가안보법과 직접 연관된 것입니다. 저는 억압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안보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 인권 기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경제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것도 정부의 이런 주장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정부는 국가안보법을 핑계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법은 국가안보와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안보법은 비판자의 억압이나 탄압과 관계되어 있을 뿐이지, 국가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도의 국가안보법들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들—개인의 안보와 자유에 관한 조약, 구금에 관련된 조약,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됩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인도의 국가안보법은 10여 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안보법을 얘기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진정한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핑계로 국민을 억압하는 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파푸아 뉴기니아, 피지에서도 같은 법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국가안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한에 관해 예를 들면서 주장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앰네스티가 낸 남한 인권보고서를 보면 지난 4~5주 동안 2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3세의 박용길 장로는 심장병과 당뇨병이 있어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의사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3살이나 되는 여성이 심장병, 당뇨병을 가진 몸으로 실제로 남한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7살된 아이가 있는데, 제가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할 때, '좀 진지해 지세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얘기를 73살의 노모를 구속하는 정부에 대해서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 7살 난 아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제발 진지해 져라'라고. 그런데 국가안보는 진정 무엇을 보호해야 하고, 국가안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보호하려는 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의 결정과정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러한 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법, 국제기준에 일치하는 국내법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법치에 따른 사회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자하는 것은 이 세가지 상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운동은 정부가 말하는 정당성과 그 근거를 파헤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시아에서 널리 알려진 일화를 소개하고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두 마리 개구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는 우물에 살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바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 만났는데, 바다 개구리가 '나는 거대한 바다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물 개구리는 '이 우물의 물보다 더 크냐'고 물었고, 바다 개구리가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물 개구리는 우물의 물이 더 많다고 계속 우기자, 바다 개구리는 우물 개구리를 바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개구리는 그 바다를 보고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민간운동체인 우리들이 바다 개구리처럼 넓은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한 나라,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 더욱 큰 비전을 증대시켜야 하고, 이 아태지역의 진정 풍부한 전통으로부터, 문화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맞는 비전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상사태하에서의 인권보호 — 국제기구의 감시

레안드로 데스포이 Leandro Despouy
(비상사태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최근까지 인권운동가들과 인권단체들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라는 것이 심각하고 전면적인 인권침해와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많은 정부들에 의한 비상사태의 조치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권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나라들은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중남미의 2/3의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가 중남미 대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는 비상사태 문제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을 지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중단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본인은 12년 전에 유엔 인권소위원회로부터 특별보고관에 임명되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의 구체적인 임무는 우선 매년 비상사태를 선포한 나라들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둘째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국가의 여러 가지 조치로 인권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셋째는 비상사태의 선포가 그 국가의 법 체계와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서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하는 일이며, 넷째로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나라에서 인권 보호를 더 낫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특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유엔의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와 보고를 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다른 분과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몇몇 분과에서는 일부 국가의 인권침해 상황에 관해서 또 특별상황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지만 비상사태 특별보고관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며, 또한 각

나라는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특별보고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국제적 감독

수많은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정부는 최근까지 인권문제는 엄격하게 말해서 어디까지나 국내문제이며 국제기구의 감독(supervision)을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적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국민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러한 조치의 범위, 유효기간 및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제적 감시는 70년대부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일부 정부만이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특별한 형태를 지닌 통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몇 년 동안 그러한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국제적 감시는 매우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 증오 또는 폭력은 일부 정부가 권력남용 또는 기타 자의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할 때 대부분의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접수하는 정보와 제안이 바로 이러한 경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2. 비상사태의 법적 성격

비상사태는 이제 자의적 결정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라는 제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법률적 제도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적 감시가 가능한 특정한 규칙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국내적 차원에서는 의회와 사법부가 비상사태의 조치를 감시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는 특별보고관이나 유엔 인권위원회 그리고 다른 적절한 지역 인권기구에 의해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비상사태의 필요 조건

그렇다면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불법적 행위와 인권유린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중해야 하는 법적 원칙과 규범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비상사태를 받아들일 만한 필요조건이 되어야 하는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 따라 만들어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와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피하기 위해 규정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원칙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자신의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de facto)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공식적으로 권한이 가진 정부기관이 했는지의 여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적법성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내의 규범과 규칙에 맞도록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내 규범이란 각 국가의 헌법, 법률, 그리고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제규범이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협약 및 법규 특히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규정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특별보고관의 수입사항 (mandate)은 UN회원국인 모든 나라를 포괄합니다.

세번째는 예외적인 위협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경우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전체 인구가 위협에 처해 있고, 그러한 위기가 사회의 구조와 삶에 진정으로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반대자나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번째로 한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상사태의 특성은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외가 일상법규가 되고 인권에 대한 제한이 지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다섯번째로 비례 (proportionality)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태의 심각성과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간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또는 정치적 갈등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러한 제한은 상황이 요구하는 엄격한 틀 내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부 당국의 권력 남용에 저항해야 합니다.

여섯번째 원칙은 특정 인권의 양도불가능성 (inalienable character)입니다.

모든 국제협약의 공통된 특징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권리의 행사를 제한된 기간 동안 유보할 수 있는 정부당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은 예외적이어서야 하며 생존권(right to life), 고문금지, 노예금지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상태라거나 아무리 위기가 심각하더라도 제한되거나 유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어떤 시기와 상황에서라도 특정 인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존권은 위기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더라도 유보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 밖에도 두 가지 실질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비상사태하에서 채택된 모든 조치와 제한은 인종, 성별, 피부, 언어, 종교, 사회적 출신 등을 근거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 비상사태의 목적이 쿠데타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나, 인종주의 또는 식민주의 정부의 경우처럼 불법적인 정부의 수립과 영속화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모든 정부는 어떤 경우에라도 비상사태 특별보고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국제 협약(ICCPR)을 비준한 국가의 경우는 UN 사무총장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지난 12년동안 특별보고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에 위에서 언급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함으로써 인권에 부정적으로 끼친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아래는 가장 심각하고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A. 사실상(de facto)의 비상 사태

현실적으로 세계에는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실상의 비상사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금하거나 재판없이 가두는 조치를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고도 실시하는 경우에 이것은 사실상의 비상체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범과 규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교활한 방식의 하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사람들을 구금하고 난후 비상사태를 해제했지만 구금된 사람들을 계속 그 상태로 놔두는 것입니다. 영국식 사법 전통을 지닌 아시아 국가에서 이러한 위반사례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과거 식민지 지배의 유산으로 내려온 행정권력이 비상사태 선포없이 그리고 사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당한 기간동안 사람을 체포, 구금하곤 합니다.

B. 비상사태의 영속화

또다른 유형으로는 비상사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한시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지난 70, 8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1954년부터 1988년까지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했던 파라과이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C. 교묘한 비상체제의 위조(속임수)와 제도화

‘교묘하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정부가 여러 가지 변칙적인 조치를 하는데 사실상의 비상사태를 지속하거나 또다른 형태의 자의적인 결정을 동시에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러한 인권침해는 대개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소의 복합적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사태의 영속화, 정부가 취한 조치와 사태의 심각성과의 불일치, 국내법과의 불일치, 국가의 안보유지가 아니라 반대세력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유린 등입니다. 가장 최악의 사례는 브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정시대에 브라질에서는 헌법보다 높은 권위를 지닌 100 여개의 비상사태 법률이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나 칠레의 피노체트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비상사태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비상조치를 합법적인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의 목적은 행정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5. 비상사태 및 국가보안법

냉전시대 내내 정부가 비상조치를 취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한 합리화는 '국가 안보 유지'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냉전시대에 수많은 정부가 국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념 및 전략적 대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반대세력은 단지 야권이 아니고 국가의 적, 국제첩보원, 즉 국가의 안보에 위협한 대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라틴아메리카의 '국가안보 독트린'이었는데 이 독트린은 지난 수십년간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비상사태 선포는 독재자가 다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사용된 사법적 도구였습니다. 한편 국가안보 독트린은 사실상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념적 도구이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거의 모든 정부가 비상사태를 법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해도 위기와 불안정의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원칙과 규칙을 존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진정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비상사태가 자의적 체제가 되지 않고, 정치적 탄압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보와 국제적 감시에 대한 수용이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일반 법규하에서 비상조치의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치로부터의 위험한 이탈과 왜곡현상이 있습니다. 비상사태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위와 인권소위에 제출한 제7차 보고서(E/CN.4/sub.2/1994/23, paras. 39-41)에 서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랜 민주적 전통을 지닌 나라에서조차도 일상적으로 더욱 빈발하는 법의 남용은 그것이 정상적 상태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형법이나 절차의 형태를 띄고 있을 때 특히 심각하

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국가안보 (보다 구체적으로는 반테러 법 제정), 마약매매 금지 캠페인, 긴급구속, 출판과 관련된 심문, 그리고 최근에 빈발하는 이민자에 대한 심문 등이다.”

“특별히 우려가 되는 최근의 사태는 이러한 법률이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상황에서만이 유보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도입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문제의 보통 법제정이 종종 예외적 상황하에서조차 침해될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종종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할 것을 자의적 구급에 관한 실무그룹과 다양한 주제별 특별보고관,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와 외국인 혐오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호소한다.”

5. 새로운 도전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20~30년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 가장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였는데, 오늘날 이들 국가들은 국제적인 감시를 받아들이기 준비가 훨씬 더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종의 역설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럽 국가들이 국제적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 중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탈법적인 조치 이를테면 이주민들이나 난민들, 그리고 망명신청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비상사태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행정부가 의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채택함으로써 정부가 더욱 예외적인 권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비상사태의 선포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식민지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거나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비상사태의 문제가 학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 역시 아르헨티나에서 비상사태의 피해자였으며, 10년동안이나 유럽에 정치적 망명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특별보고관에 임명되어 그러한 현장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의 연설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에 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질 의 및 답 변

질문자 1 : 민간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유엔기구를 통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상사태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만약에 어떤 나라의 정부가 비상사태를 특정 지역에만 계속 유지시키려 한다면,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 분쟁지역의 선포라는 방식으로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에서도 여러번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질문자 2 :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비상사태에서 저지른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처벌문제입니다. 비상사태가 끝난 이후에 정부나 군부의 인권침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재판소가 있지만 정부나 군부가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국가안보 체제 이후에 과거 인권침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엔에 관한 것인데 안보리가 여러 가지 국내적인 갈등상황에 대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유엔이 군사적 성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상사태에 대해서 옵서버를 보내는 것 이외에 더 강력한 개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 : 첫번째 질문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나 적법한 절차없이 구금하는 인도와 같은 경우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절차가 열려 있으며, 자의적 구금을 당한 사람들은 특별보고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이 없이 구금을 당했을 경우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엔 기관에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의 대표를 유엔에 파견하여 해당 정부와 대화를 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보고관을 해당 정부가 초청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아주 이상한 것은 높은 수준의 산업화와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에서도 아직도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냉전체제에서만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거 비상사태에 의해 희생되었던 나라들에서 희생자들에게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몇의 경우에 독재치하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월급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질문 : 제 질문은 인권가해자가 정부 안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비상사태 이후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즉 비상사태를 부정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 :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원

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 이런 가혹행위에 대해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로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처벌을 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면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이티에서 4년동안 살았는데 아이티는 비상사태 상태였으므로 압력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적인 정부를 내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다 더 심각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개입을 하자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티에 관한 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새롭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제 1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1.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한국과 아시아
2. 국가안보 국가에서 인간안보 사회로-일본의 관점
3.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제 NGO의 관점
4. 아시아의 국가보안법-국가안보와 민중안보
5. 아시아의 국가보안법-사회적 병리 현상

<발표 1>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

오 재 식

(한국사회교육원 원장)

1.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끝난지 5년이 되었다. 그러나 냉전체제로 가장 값비싼 댓가를 치른 한민족에게는 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밖으로 탈냉전의 언어를 사용하고 안으로는 냉전의 공포를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이율배반에서 오는 충동을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잘 소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그것들을 상황에 맞추어서 골라 쓰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상황 판단과 거기에 대응하는 원칙이 극히 주관적이어도 우리는 그것을 관용해 오고 있다. 이런 관행이 축적해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되고 이제는 관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그것에 대한 헌신을 공언하다가도 우리편에 불리해지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 상황의 특수성을 내세우고 그 뒤에 숨어버린다. 한국은 이제 국제연합의 안보리사회 회원국이 되었고 조만간에 OECD에 가입할 전망이다. 이렇게 국제관계가 활발해지고 우리의 역할이 증대할수록 냉전체제를 유지해야하는 국내정치와의 모순은 날카롭게 대립되어 갈 것이다. 우리 정부의 수반인 김영삼대통령은 금년 3월 코펜하겐의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간안보가 국가안보에 우선한다는 손을 들은 셈이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이런 이중적인 기준이 한시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다해도 한 정부의 지속적인 방침이거나 정책으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모순을 하루 빨리 극복하는 것이 나라의 이익이 되리라고 믿는다.

2.

냉전체제의 붕괴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그것은 ① 세계주의의 허구성이 탄로되고 ② 그런 세계주의를 바탕으로한 구세주의가 붕괴하여 정치적, 종교적 언어의 보편적 신빙성이 실추되었으며 ③ 국민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한때 세계의 많은 인구를 흥분시키고 동원 시켰던 세계주의가 실은 허구였고 그것을 지탱했던 제도적 통제가 느슨해지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① 민족·민족주의, 종족·종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그것이 복고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②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나타났으며 ③ 시장의 언어와 역할이 종래의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런 현상들이 기존 질서의 붕괴 뿐만 아니라 가치의 공백상태를 가져왔다. 그것은 제2차대전후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 그때, 전쟁에서 벗어난 인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반해서 냉전의 종식후에는 전세계적으로 피곤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다. 그때는 식민통치의 종식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고 전승국가들이 패전 국가들을 전쟁배상이란 형벌로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는 경륜도 있어서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가 했었다. 평화를 열망하는 마음에 '세계'가 일시적으로나마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승국가들의 입장에서 본 대상으로서의 세계였다.

인류를 빈곤과 무지와 공포로 부터 해방시키겠다던 메시아주의는 전후의 세계체제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좋은 명분이 되었다. 많은 신생국가들이 서구식의 국민국가를 형성하게 되었고 주권을 주장하는 실제로 등장했으나 그들은 냉전체제의 진행과 더불어 전승국가들의 가치관과 체제의 대열에 편승하는 길밖에 없었다. 도리켜 보면 전후 새질서의 틀은 서구라파의 근대화 과정의 연장이고 확장이었다. 구미의 세계주의는 사회주의 권의 심각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UN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그것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우위성을 증명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70년대의 두번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각국은 노골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세계주의의 허구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나 그것을 내걸었던 당사국들은 냉전의 대치국면 때문에 내색을 못한 채 10수년을 더 버티어 온 것이다.

냉전 종식 후의 세계는 전후의 시기보다는 덜 흥분했지만 체제와 가치관의 변화란 점에서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시장언어의 확장과 정보화의 진척 그리고 교통망의 발달들은 다 국민국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나 그것을 대체할 제도나 실체가 아직은 없다. 지구적 환경의 파괴는 현대인의 소비형태의 변화를 촉구하고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반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50년전과는 달리 300여년에 걸쳐서 내려온 이른바 서구의 근대화과정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전후의 새질서는 그 기본 가치에 있어서 과거의 연장이었다 할 수 있겠으나 냉전후의 새질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근대화의 찬란한 성과에 근거했던 정치적

메시아주의도 시들기 시작했다.

냉전시대의 양진영의 도덕적 경쟁은 양체제의 메시아주의적 성격을 과장해 왔지만은 경쟁의 필요성이 없어진 지금은 그것의 과잉포장이 드러나고 또 실제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잃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상대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약해져서 이른바 시장성의 경쟁력을 갖지 못한 쪽은 무자비하게 도태시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냉전 시대의 아시아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 몽고, 북한, 중국, 월남에서 버마로 이어지는 대륙의 사회주의적 국가들과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 대만, 홍콩 그리고 ASEAN 제국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신흥공업국가군(NIES)들의 해양권의 나라들은 자본주의적 실험을 해왔다. 냉전종식 후에 대륙권의 나라들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시도하는 단계이지만 그렇다고 냉전시대적 기준으로 그들이 자본주의 진영에 흡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른바 NIES 국가들의 경우 국민국가의 형성과정도 고도 경제성장을 표방한 개발경제정책과 맞물려서 진행되었다. 개발경제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를 배경으로 UN의 중재와 주선으로 진행되었으나 물론 미국경제와 체제가 뒤에 있었음은 다 아는 일이다. 개발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조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그때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각 나라에서 권위주의적인 정치형태가 시행되었다. 이런 접근은 국제금융기구와 세계은행의 원조와 차관 조건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이런 방식이 몇몇 나라에서 경제성장의 과정을 단축시키는데는 성공했으나 대신에 막중한 사회적, 정치적 댓가를 치렀다. 그것은 인권의 탄압, 중간층 형성의 지체, 시민사회 대두의 저지등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발전에 있어서 보편적 가치의 창달이 늦어지고 경제성장을 중시한 국가이익 추구에 매몰되어왔다. 이제 이들 각 나라에 중간층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나 그들이 시민적 자유와 그에 따르는 보편적 가치들을 지켜갈 수 있는냐는 이제부터의 과제다.

아시아의 NIES들 중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과를 올린나라에 속한다고들 한다. 한국은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고 군사정부주도형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경우다. 국가 건설 과정에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단일국가를 세우지 못한것이 한민족의 현대사가 뒤틀리는 원인이되었다. 한국과 유사한 전후사를 가진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은 한국은 시민사회의 형성없이 근대적인 국가가 형성되었고 부르주아지의 형성없이 경제성장을 진행시켜왔다. 때문에 국가를 대신하는 정부나 경제주체들은 시민의 견제를 받지 않고 온 것이다. 정치권력의 전횡과 시장논리의 횡포가 자행된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민이 그동안에 경제적 성과를 올린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위해서 치룬 사회적 인간적 댓가는 높았고 그러므로 성장후에 새로운 세계를 경영하는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 정부는 스스로 국가인양 군림했으며 정치세력의 비호아래 성장한 경제는 도덕적인 명분까지 행사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이 지상의 목표였다. 그것은 정치언어가 되고 도덕적인 행위로 까지 과장되었다. 이렇게 국가의 우선순위와 도덕적 명분의 비호아래서 정치와 경제는 유착관계에 들어가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다 정부에 대한 도전 또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처벌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냉전 후의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 앞에서 국가와 국가안보에 관해서 재조명해야 할 때가 왔다.

3.

금년 3월의 코펜하겐 사회개발세계정상회의에서는 인간안보란 개념이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가안보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조인 것이다. 이것은 인권운동단체들의 주장을 넘어서 국가의 안전과 안보가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발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정부수반들이 인정한 것이 된다. 물론 인간과 국민, 시민과 국가에 대한 논쟁이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제헌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씨는 그의 회고록에서 말하기를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표현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었다 한다. 그런데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인민’대신에 ‘국민’을 쓰기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생각했던 인민(people)은 국민 보다는 훨씬 보편적인 실체였다. 그 개념을 헌법에서 살리지 못하고 이미 북측의 공산주의자들을 의식했던 국가주의적 논쟁에 제압되고 만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의 의식구조는 인민 또는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개념보다는 국민이라는 제한적이고 특수한 개념에 맞춰서 짜여지게 되었다. ‘인민’이 사회주의적인 용어라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인간에 대한 애정 대신에 국민의 이해관계에 집착하게 되었다. 국민의식은 국가 이익을 우선시키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를 유보해도 된다는 단순논리가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다.

교육의 보급, 정보망의 확장과 정보량의 증대는 민중의 의식을 깨우치는데 크게 역할을 했고 이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요구는 ‘국가이익’을 내걸은 정부와 자주 충돌했다. 정치적, 시민적 기본권에 대한 탄압과 성장정책이 수반한 빈부격차의 확대등은 한국가내의 사회적 불안을 가져오고 그런 불안이 갈등과 충돌로 번져서 결국은 국가이익을 해치게 된 것이다. 정치적·경제적 불평등, 사회적·문화적 차별, 그리고 종교적이거나 종족간의 충돌들은 다 군대나 경찰의 물리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인류를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전후의 세계적 메시아주의는 이제 한 국가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가 안에서 입증되어야 하게 되었고 국가는 안으로부터 오는 이 압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본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에 기초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막대한 이야기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역사상 얼마나 많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남용되어 왔는가는 우리가 다 경험한 바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명제나 이념적인 이해 보다는 모든 인간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또 받아들이는 애정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드린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은 인간이 자기 본연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국가 목표의 으뜸이어야 한다는 것이 코펜하겐선언의 의미이다.

이제는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국방상의 안보가 일국가 단위의 군사전략만으로는 힘들어 진것과 같은 논리로 국민경제가 홀로서기가 힘들게 된 세계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을 홀로 담보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도 다국간의 협조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내가 알기로는 인간안보(people's security) 논쟁을 제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1983년 뱅쿠버 총회에서였다. 그때 구라파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론을 가지고 한참 흥분해 있을 때다. 일정지역내의 안보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상호정보의 교환과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 논지의 요체였다. 동 총회의 국제위원회 분임토의장에서 한국대표는 짧은 토론을 통해 국가간의 협조에 의한 안보는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그 지역내의 인간들의 안보와는 연계된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더 포괄적인 개념인 인간안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세계교회가 이런 주장을 담게 된다는 국가란 이름으로 희생된 인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서 위임받은 바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목표가 되고 오히려 구성원들을 국가의 시너로 전략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해왔던 것이다. 주권은 국가로부터 나오고 있었고 국가를 등에 업은 정부는 국가가 갖는 명분을 남용하여 왔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뿐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나라들도 같은 길을 걸어온 것이다.

인간들 상호간의 관계의 확장은 이제 국민국가의 국경안에 가두어 둘 수가 없게 되었다. 또 한 국가를 지탱해 오던 이념이나 가치들도 상대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만 그런것이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민주적 정치제도와 또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관용하는 틀을 가져야 한다. 다양성에 대한 관용은 종교적 신조와 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을 관용하는 것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자신의 믿는 바를 관철하는 종교적 타성에게는 생소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종교적 신념이 국가이념과 야합할 때는 인간을 파괴하는 악마적인 힘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것은 국가 권력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이고 인간중심적인 문명관을 새롭게 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 온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기 이해와 세계관이 잘못되어 왔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근대화를 추진해온 합리주의의 기계적 세계관, 통제되지 않는 사유제(私有制), 경제위주의 발전론, 소유에 근거한 행복론 등등, 우리는 이런 인간이해와 삶의 길이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믿고 있으나 아무도 또 아무 국가도 이 길을 막을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4.

한국의 경우 또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근대적인 국민국가 형성된 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짧은 시기였으나 국가는 그 나름의 역할을 했다. 오랫동안의 외세에 의한 식민통치로 부터 벗어나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생업에 임하게 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듯이 한국도 민주제도를 도입하여 정부를 세우고 정부주도하의 국민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해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형 경제 성장정책이 크게 진효한 것은 그것이 민족주의와 연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민족주의적 선동은 막강한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었다.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여타 산업의 종사자들이 악조건과 정부의 권위주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끈기있게 일을 해 온 것은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다는 정신적 힘이 컸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선량한 국민의 여망을 역대의 정부들은 배신해 왔다. 정부는 스스로 국가로 군림했다. 정부와 국가와의 구분이 없었으므로 국가이익과 정권의 이해가 구분될 수도 없었다. 더구나 한국은 군에 의한 정치지배가 3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군 장성의 일부가 정부의 역할과 국가의 명분을 독점해 온 것이다. 민족국가를 일으켜 세운다던 본래의 꿈은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목전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천민자본주의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권을 장악한 일부 군장성들과 그들의 비호아래 성장한 기업들간의 유착관계가 관계가 되고 이 양자에 의한 부패는 제도적인 '합리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런 구조적인 부패가 민족의 기상을 꺾고 민족주의적 에너지를 약화시켰다. 최근에 드러나기 시작한 한 전직대통령의 부패상은 이런 구조의 극히 일부가 폭로되는데 불과하다. 겉으로는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내걸면서 안으로는 사리와 사욕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결정적 증거는 그것이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이런 부패구조를 두둔하고 보호하는데 쓰여져 왔다는 것이다. 한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은 국보법의 제정구실로 이용되어왔으나 실제로는 나라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보다는 정권과 특정집단들의 반국가적 행위를 두둔한 데 악용되어왔다. 그것은 위기상황에 대응한다는 한시적인 명분을 무시해버리고 헌법위에 군림하는 횡포를 일삼아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정착하지 못하게 해왔다. 그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무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의 적용과 집행이 극히 자의적이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사회·문화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해 왔다. 그것은 또 인권의 기본규범을 무시하고 시민과 경제권 등을 말할 것도 없고 사상, 신앙, 신조의 자유까지를 제재하는 독재정치의 중형무진한 도구로 쓰여져 왔다.

한국의 국보법은 1948년 정부수립 직후에 제정되었지만은 처음부터 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데 쓰여져 왔다. 군사정부가 들어선 1960년대부터는 정치적 반대자가 국가를 위협하는 적(敵)으로 규정되고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고, 사회적 정의와 독재에 대한 저항을 다 통털어서 한 나라의 주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똑같은 것으로 취

급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공해문제를 놓고 특정기업에 대한 비판과 압력을 가해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처벌을 받게까지 되었었다. 이런 일을 자행하면서도 국가의 주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외부의 간섭을 배척했다. 국가환경의 특수성을 들어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토론도 금지시켰었다. 이것이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낳은 드라마의 뒤에 숨은 이야기이다. 토론과 비판이 없는 정치 풍토, 견제세력이 없는 정치체제는 사실 가장 약하고 또 때때로 국가이익에 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해왔다.

5.

이제 우리는 국가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국가의 목적이 무엇이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탐색하는 마당에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토론해야 할 때가 되었다. 냉전종식후에 국가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고 있고 국가의 역할도 또한 많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직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국가기능을 대신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언어와 기능이 세계화되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보다는 훨씬 능률적이라고 해서 시장의 기능이 국가의 그것을 대신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시장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언어의 창출이 급하다. 그렇다고 설령 그런 언어와 가치체계가 확립된다고 해서 그것들을 종래의 국가란 틀안에서 가두어 두면 급속하게 국경을 벗어나는 시장의 힘을 견제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치언어와 행동은 국가안에서 창출된다 해도 국가를 넘어서는 것이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더 큰 가치를 달성시키는 수단이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새 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이지만 충분한 것은 못된다.

인류가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공생(共生)의 길을 찾아 나서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길은 문화적으로 다변적(multi-lateral)이고 정치적으로는 다중심적(multi-polar)이라야 한다. 문화적 다변성을 지키기란 힘든 일이다. 여러 가치의 충돌을 피하는 길은 힘이 강한 문화가 관용하는 길 밖에 없다. 관용은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단련시켜서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인내도 있어야 한다. 정치적 다중심의 원칙은 힘이 있는 한 중심이 패권의 유혹을 이겨내야 지켜질 수 있다. 자기를 지키고도 남는 힘은 자기 중심적 집착에 탕진하지 말고 인류공생의 길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본 원칙들을 설교하고 또 지켜가기 위한 세력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국제연합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유일한 기관이지마는 그것이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흥정을 넘어서 인류의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영감을 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시아의 국가들은 어떤가. 우선 아시아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시아는

이 지역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었다. 서양이 아닌 또는 미주(美洲)가 아닌 지역을 가리켰다. 그러므로 서구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아시아는 공통점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공통점은 미국과 서구라파제국의 정치적·군사적힘을 매개로 얻어진 것이었다. 이 틀은 냉전체제를 통해서도 계속되었다. 이제 아시아가 이 틀을 벗어나서, 즉 외부 세력의 매개없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아시아의 나라들은 아직도 국가주의의 매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한 노력은 일본을 포함한 구미의 공업국가들의 몫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최근들어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APEC)란 것이 시동되어 장기적인 전망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에 국한된 것이다. 경제는 사람들의 일차적인 관심을 모으는 도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도구나 매체로 삼을 수 있는 정치언어가 없으면 경제자체가 목적이 되고 만다. 중국사상에 서양의 학문을 기(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었다. 그것은 리(理)의 하위개념으로서 리를 완성시키는 방편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자세가 요즘은 민족주의적 감정과 결부되고 그것이 마치 서양문명이 옹호해 온 인간가치의 보편성과 대칭되는 아시아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아시아는 그 다양성이 특징이다.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시아의 풍부한 자산이다. 이 다양성을 국가주의의 틀 안에다 무리하게 맞추거나 각각의 특성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 다양성이 관용의 바탕이 되고 그것이 공생(共生)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남이 이룸지어준 아시아가 아니라 스스로를 주장하는 아시아는 이제부터 형성되어가고 있다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육성과 창달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다. 민주적 정치제도 없이는 공생의 틀을 짤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제의 요체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권의 존중과 옹호, 생존권의 보장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새로운 지표들이 국가건설과 나아가 새 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개발의 후참자라고 해서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고 국가주의의 특수성을 내세울 수만은 없게 되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정치언어를 창출할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는 메시아주의의 황포를 보아왔으므로 어떤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도 시장도 아닌 시민층의 증대하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시민에너지의 육성과 조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해도 국가의 이름을 빌린 정부의 독주와 정치권력의 보호를 받은 시장의 황포를 견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와 시장이 인류 공생의 목표를 이룩해가는데 이바지하도록 밀고 가야 한다. 과학이성으로 치닫는 합리주의의 한계를 알지마는 인간관계와 제도의 합리성을 버릴 수는 없다. 경제위주의 발전 모델의 단점을 잘 알면서도 경제행위를 중지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자원으로서의 에너지가 없어서는 안되지마는 그것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에 절도와 조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질서의 재편성이 불가피하다.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일깨워 주고 인간 욕심의 무한한 확장을 막는 일을 시민운동이 해야 할 것이다. 재산의 사유화제도는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끝이어야 한다. 사유화가 일종의 가치가 되어서 축재에 한계가 없고 사회의 공공자산을 가로 채거나 일류공동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나아가서 도덕적 명분의 사유화와 그것을 두둔하기위한 정치적 이론들도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목적과 그 명분을 사유화해 온 일부집단들을 보호하는데 남용되어 왔다.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나라의 자산이라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각오가 국가안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한국민은 갈라져 살아 온 형제자매와 더불어 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주장해 온 것은 이와 같은 대전제 때문이다.

<발표 2>

국가안보 국가에서 인간안보 사회로 - 일본의 관점

킨히데 무자코지 Kinhide Mushakoji
(교수, HURIGHTS 의장)

1. 국가안보 국가 지역

아태 지역의 특징은 국가주의 모델, 즉 산업화에 의한 성장을 지향하는 국가 안보국의 모델이 지배적이다. 아태지역은 또한 인종, 종교, 그리고 문화 전통이 아주 다양하다. 예외로 간주되었던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밀려드는 이민자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외견상 동질성이 급속하게 깨지고 있다.

민주주의 모델을 제도의 집합으로 보면 국가는 시민 사회와 동등한 민족(nation)의 안보의 수호자가 된다. 이 민주주의는 서방에서 지난 5세기 동안 형성된 것으로 아태지역에 도입된 것은 최근 수년의 일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해외의 침략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했던 국가는 군사적 힘을 사용하여 국내의 정치적 적대세력과 그 국민 자신들을 탄압하였다.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는 프랑스 혁명기간에 반민주적인 반동 봉기와 같이 민중의 적에 맞서기 위해 국가에게 허용한 예외적인 제도였다. 이 때 국가는 민중의 통제하에 있으며 이 제도는 민중이 계급과 인종에 따른 다양한 정체성에 의해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의 국민국가를 구성한다는 사실에 의해 합법화되었다. 또한 이 제도는 국가가 동질적인 민중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태지역에서 사회는 평등한 시민 개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동질적이지 않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경제의 '선도(leading)' 영역에서 나오는 잉여물의 집적에 기초하여 가속화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하였고 특정

사회 영역이 '개발될(exploited)' 때, 덜 '생산적'인지 아니면 더 생산적인지에 의해 차별되었다. 한편 산업 성장을 최고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인간의 권리와 안녕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국가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아태지역에서 국가안보는 국내안보(Internal security)로 변질되어 국민의 안보가 아닌 개발독재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서구에서 발전된 '국가안보'의 본래 목적이 아시아에서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기구도 아시아에서는 경제성장을 국가이익과 동일시하는 소수 독재자의 손에 맡겨져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이렇듯 아시아에서 국가안보의 왜곡에 덧붙여, 지구화되는 경제과정은 국가안보를 더욱 심하게 왜곡시켰다. 개발독재 국가의 정당성은 지구화된, 즉 초국경적인 경제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국가안보는 초국적 기업의 투자자에게 '국가 위험'(country risk)의 감소를 의미한다. 국내안보는 초국적 기업의 관심이 되고 소수 독재자의 안보이해는 국제사회의 이해가 된다.

2. 새로운 희망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을 반드시 '정상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은 미국과 미국의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인 유럽과 일본의 공식적인 지원에 힘입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출현해서 냉전이 종식된 최근 몇 년간에 다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먼저 연합국(united states), 즉 파시즘적 주축국(Fascist Axis States)에 대항 단결했던 국가들의 승리로 유엔과 세계인권선언이 탄생되었다. 또 그것은 뉘른베르그(Nuremberg) 및 수가모(Sugamo) 전범 재판(War Crime Trials)이 계기로 작용하였다. 기본적 인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 특히 집단학살(genocide)과 반인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자행한 자들은 기소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냉전에 의해 이러한 경향이 갑자기 중단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철의 장막의 두 진영에 나타난 군사독재정권은 양진영 공통의 적 즉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에 대치하여 감내해야 하는 필요악으로 허용되었다. 냉전에서 비롯된 이러한 불행한 결과에 대해 인류는 탈냉전 시대인 오늘날에 와서야 재검토하고 있다.

최근의 이런 추세는 국제사회가 국가, 특히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책임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희망의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세계형사 재판소(World Penal Court)의 창설이 고려되고 있고 전 유고연방과 르완다에서 자행된 범죄에 관해서 두 개의 재판소(Tribunals)가 운용되고 있음을 볼 때, 국가안보의 구실하에 자행된 국내외적 인권 침해가 국제적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지배적인 역사적 신화(historical myth)가 영백하게 잘못되었다

고 밝혀질 때 비로소 그러한 법적 조치가 국제적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오늘날 군사 혹은 준군사 안보 국가(para-military security state)로서의 발전주의적(developmentalist) 국가 모델이 수용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국가안보 국가는 불행하지만 불가피하게 산업성장의 한 단계로 용인된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는 종종 군부를 지칭하는 근대화된 엘리트에 의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며, 국가가 특정한 GNP 수준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면 민주주의가 출현하고, 인권 침해는 사라진다고 한다.

만약 이런 역사 해석이 허용된다면, 안보국가 논리의 자의적 적용에 대항하여 처벌제도를 개발하려는 모든 노력은 이것이 국제 사회가 용인해야만 하는 필요악이라는 '현실주의적' 신념에 의해서 약화되어 버리고 만다. 여기서 손쉬운 타결책으로 제공되는 것이 다른 국가의 내정 불간섭 이론(the theory of non-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of other States)이다. 부유한 선진국들이 인권 침해에 반대하여 남쪽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다. 특히 남쪽의 국가들이 '국가 위험(country risk)'을 감소시키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를 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안보국가의 권력남용을 처벌하는 국제적인 인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세계, 특히 아·태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 논리적 근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 요구된다.

3. 가장 나쁜 본보기인 일본

이 점에서 일본은, '성공적인 안보국가'가 성장 과정에서 자행된 노골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체재받지 않고 선진 산업국가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견해를 반박하기에 적합한 '나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사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국가의 '선두주자'였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 일본은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는 최악의 발전주의적 안보국가로 발전해갔다. 일본의 산업 성장은 식민지 민중의 착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군사력은 1930년대에 특별 비상입법들에 의해서 강화된 일본 사회의 군국화에 기반하고 있다.

1945년 패전한 이후 일본은 국민 동원 체제라는 지속적인 비상사태를 통해서 침략적인 안보국가로 되었으며, 국민적 단결(national cohesion), 협조적인 노사관계, 노동과 규율의 강화에 기초한 특수한 자본주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일본은 필요한 해외 시장을 얻었다. 그리고 군사적 수단 대신 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과거에 설정했던 대동아 공영권(Great East Asian Coprosperity Sphere) 건설 목적을 달성했다. 전쟁 범죄와 그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했던 50년간의 냉전이 종식되자 그 누구도 일본에 의해 자행된 일체의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국가 노예인 '정신대(conform women)' 희생자의 사례에 의해 국가배상 문제가 제기되었고, 침략적 안보국

가인 일본에 의해서 자행된 범죄가 국제적인 논쟁과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례는 식민지와 점령 국가를 지배하는 국가안보 관련 법률 하에서 가장 추악한 군국주의적 전통을 가진 한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노골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는 전형적인 개발주의적 국가의 형태로 계속해서 인권 존중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해왔다. 만약 이 국가가 계속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국제 사회에서 '존경할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기이한 사례는 최악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례때문에 개발주의적 국가안보 국가는 '성공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단계를 경과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으며, 그 나라의 시민들이 높은 생활 수준과 '민주적인' 제도 등 모든 측면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필자가 '그 나라의 시민'에 밑줄을 그은 것은 이 이익이 비일본 국적의 시민들과 반드시 공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성 노예제도는 '섹스 관광'과 아시아(그리고 동유럽과 같은 세계의 여타 지역) 국가의 인신매매 (trafficking)를 토대로 한 섹스 산업의 형태로 모두 번창하고 있다.

'정신대(comfort women)'라고 불리는 국가 노예들은 일본인 국가(Japanese state)의 희생자이며 일본인 관광의 희생자이다. 아울러 인신매매는 사적 영역의 희생자들이다.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이웃나라들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인간 및 사람 안보라는 관점에서는 일본은 아태지역에 위협 요소이다. 그것은 일본 사회가 점차 덜 안전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위협과는 관련이 없다. 매스컴이 이민 노동자 관련 범죄를 취급하는 회수가 증가하는 현상 이외에도, 옴 종파(Ohm Cult)가 발생시킨 최근의 사건들은 보수적인 정치 지도자에게는 비상사태 입법(維持-立法, Yuji-Rippou)의 재도입을 유도하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런 시도는 북한의 '핵 의혹' 때 동원되었지만, 북한 문제로는 더 이상 이런 시도를 정당화시킬 수 없게 된 이후 옴진리교 사건은 좋은 사전 시험대가 되었다. 옴교의 전례 덕분에, 이 사교(邪教)에 대항해서 파괴 활동 방지법(Destructive Activities Prevention Act)을 적용하라고 보수파는 정부에 촉구하였다. 높은 GNP를 달성한 이후, 일본은 시민적 자유가 존중되는 국가였다.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일체의 국가안보 입법이 없는 '평화 헌법'을 보유했다. 일본의 노골적인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시기에 비상입법(emergency legislations)의 가능성이 재고되고 있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매우 심상치 않다고 보여진다.

4. 인간안보를 보장하는 아태지역을 기대하며

우리는 일본의 예에서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국제 시민사회와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을 인간안보를 존중하는 국가로 바꾸기 위해 다음의 세가지 수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가지 차원이란 공중의 태도와 가치 지향의 수준, 법적인 인권 규범 및 규범의 적용에 관한 수준, 그리고 경제 및 정치 구조의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사회의 반인권적 측면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권의 문화가 수립되어야 한다. 비상사태 정권의 '정신대' 정책과 오늘날의 사적 노예 무역과 관련하여, 가정과 매춘의 이중 기준적 가부장주의 (patriarchalism)에서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본의 전통적 성문화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가부장적인 문화 경향은 일본을 과거의 군국화라는 더 나쁜 형태로 이끌었던 일본식 가부장적 문화의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이 문화는 동질화되고, 계층화되며 강도높은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산업 발전 지향적인 사회를 계속적으로 지탱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다른 사회는 이런 반인권적 문화 경향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태지역의 여러 국가안보 정권은 근대화 과두세력에 의해 착취가 가능한 강력한 발전주의적 국가안보 국가와 중세봉건적 문화 전통에 기반이라는 상이한 구조에서 수립 지탱되었다. 민주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종류의 운동은 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태도와 가치 지향을 변혁시키는 동력이다.

두 번째 수준으로, 형사처벌 메카니즘을 지닌 효과적인 인권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 정권의 행동을 제한하고 반대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 배상만을 다루고 있지만, 전 유고와 르완다 국제재판소는 인권 침해의 책임자를 재판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군부, 경찰, 기타 안보국가의 폭력 기구에 참여한 어떤 누구도 처벌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신대'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의 국제 인권제도는 일본이 인권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 인권 침해는 때로 유엔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의 개입에 의해서 처벌되지만, 이것은 아주 '선별적인'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범죄자 정부가 걸프전과 그 이후 시기의 이라크처럼 세계 자유 질서와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적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유엔은 안보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선별성을 제거하는 것과 유엔이 국가보안법 정권이 지배하는 어떤 국가의 국내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수준으로, 패권주의 국가와 일본을 포함한 산업화된 동반자 국가들의 자유무역 지향형 세계적 지역적 기구 활용정책이 중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에는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아태경제협력(APEC)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제 정책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를 무시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개발주의적 국가의 정책은 중지되어야 한다. 일본과 신흥공업지역(NIEs)에게서 예증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또한 아·태 지역은 일본과 신흥공업지역(NIEs, 이를 일본에서는 JapaNIEs 모델이라 한다)이 경제성장을 위해 지불해야 했던 인권 비용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 모델은 종종 경찰 및 혹은 군부의 통제에 의해서 강화된 국가주도의 하도급적 위계질서를 이루고 있다.

아태지역의 국가와 사회는 인간안보로서의 민중안보가 인간발전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아태지역은 현재 산업 성장의 희생자인 민중에게 덜 수직적이

고 더 우호적인 지역 노동분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모든 철저한 조치들이 이 지역에서 뿌리내리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듯이,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역(逆)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이 초국적 투기 시장 메카니즘을 사회와 인간 개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메카니즘으로 바꾸어야만 한다. 토빈 택스(Tobin Tax)와 같이 개발주의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조치들에 의해 개발주의적 안보국가에 친화적인 국제 환경을 점차 변경시킬 수 있고 아태지역의 여러 사회속의 비공식적·주변적 영역에서 소규모 단위의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지속가능한 인간발전 과정을 향한 나아가는 험난한 길이다.

문화적, 법적,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노력이 국제 수준과 아태지역 모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의제가 현실화되려면 민주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운동이 유엔과 함께 힘을 함께 하고 유엔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보다 책임감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 질 때까지 일본은 생생한 문제의 사례로 극복의 대상으로 존재할 것이다.

<발표 3>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제 NGO의 관점

에릭 소타스 Eric Sottas
(OMCT/SOS-Torture 소장)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과 함께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시작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제거됨으로써 국제정치의 지형이 재편성되었다. 한국과 같이 40년 이상 분단된 나라는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로 동일한 고대 문화 유산을 지녀 온 한 민족으로의 통일을 기대할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른바 '소비에트 제국'의 소멸은 탈냉전 시기의 하나의 주요한 사건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 영향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있는 현 시기에 대해 편협한 해석을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한 사회모델이 다른 모델에 대해 승리했다고 너무 선부른 결론내려서도 안된다. 서방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기 오래 전에 시작되었으며 그 해결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대격변의 흐름에서 인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한 문제가 되었다. 인권의 존중을 보장할 전략은 세계적인 사회·정치·문화·경제 분야에서 일고 있는 최근의 깊은 변화를 포괄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매우 많은 정부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견해는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본인의 진술에서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본인은 인권의 실현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요인들을 포함하는 많은 요인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지만 동시에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점, 즉 인권이 단일한 문화의 산물로 다른 지역에 강요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 진화의 단순한 역사적 산물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생존권(right to life)의 행사는 특정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유형에 달려 있다. 이 권리를 방어하는 전략은 결과적으로 상황에 맞게 변형되어야 한다. 우리는 브라질의 살인 부대(death squad)에 의해서 위협받았던 거리의 아동들을 보호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 유고연방에서의 인종청소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들 사람들에게 천부적인 생존권은 동일한 것이며, 그 불가침성은 절대적이다. 어떤 문화로도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그 권리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다.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보편적으로 선언한 이러한 권리들의 핵심적 내용들은 2차 세계 대전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진영 사이의 경쟁과 팽목상대할 정도의 산업성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두 요인들은 유엔의 인권기준 설정(standard-setting) 노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서 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특정한 권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방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선언하고 보호하는 국제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 분야에 구속력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가 인권 분야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간주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집단지 세력화를 이룩한 제3세계 국가들은 민족의 권리와 발전권이 인권의 중심적 기둥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국제인권 분야에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2차 대전 이후 시기의 대비극이었던 동서 두 진영간의 갈등은 역설적으로 특정한 것을 강조하지 않고 인권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국제인권규범의 출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서방국가에서나 누릴 수 있는 사치라는 주장도 있어 왔다. 서구 산업국가들이 1950년에서 1975년 사이에 경험한 고도 성장이 국제적 차원에서 여러 인권 분야를 증진시키는 국제인권기구 성립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경제성장의 결과 선진국들은 자국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수정자본주의라는 모델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의해 통합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심어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낙관주의는 1950~1975년 약 25년의 기간 동안 일어난 성장의 특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다음과 같이 특징지워진다.

- 산업 선진국의 높은 GNP(국민총생산) 성장률
- 기간 내내 균형있고 고른 성장 수준
- 산업 선진국에서의 사실상 완전 고용
- 소비의 지속적 증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네 가지 요소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분석가들이 발견했다고 믿는 모델, 즉 궁극적으로는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요술상자의 네 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네 가지 특징은 종종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는 다른 경제적 효과와 연관되어 거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산업 선진국에서 이 기간 내내 GNP가 약 4.9%의 평균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GNP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산업 선진국 사이의 차이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일인당 소비를 현재 가격과 환율로 환산하면, 미국의 경우 1950년 \$1,260에서 1973년 \$3,860로 증가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30에서 \$2,050으로 증가했다. 유럽의 주요국가들도 미국과 비슷한 소비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20에서 \$2,999로 증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서구 유럽국가들과 일본이 세계의 선두주자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현상을 주시하면서, 마샬플랜 모델을 제3세계 국가들에 적용하면 저개발 문제를 끝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맥락에서 서방국가들은 개발 또한 권리라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선진국의 생산과 소비양식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자원의 이전을 증대하는 데 동의하면 되는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후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성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OECD국가들은 높은 생산성과 놀라운 성장을 지속하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순환적으로 나타났던 경제위기(공황)는 더 이상 없다는 환상을 갖게 되었다. 실제 1950년에서 70년 사이 OECD 국가 가운데 단 한 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는 이른바 '복지국가'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 상당 부분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국가 모델이었다.

이 시기 고도성장의 또다른 주요 특징은 기술발전과 생산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완전 고용의 실현이었다. 이는 농업부문에서 실직한 노동인구가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창출된 거의 비슷한 수의 일자리로 이동함으로써 상쇄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 생산양식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생략한 채, 노동권 분야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가능해졌다
- 새로운 일자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 교육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한 권리와 교육과 직업훈련의 확대 필요성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높은 소비수준은 이후 성장에 있어 동력이었을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권리의식과도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30년 동안 국제

기구, 특히 유엔제도는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선진국들이 대결하고 대화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여기서 두 가지 합의가 이루어진 바, 하나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 차원의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런 국제적 법제도에 인권의 다양하고 상이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경제성장의 시기, 즉 60년대 초부터 70년 초반 사이에 국제인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입안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 따른 노동자 권익 보호 제도가 강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발전권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와 같은 기구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는 사태가 반전되었다. 유엔이 채택한 '개발에 관한 10년'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개발도상국들은 매우 상이한 성장률을 보였다. 몇몇 신흥산업국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모델로 하여 성공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중 최빈국들은 - 특히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과 아시아의 일부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나라들-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저개발 상태에 침몰하는 지경이 되었다.

산업 선진국들도 경기후퇴를 경험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유럽에서는 낮은 성장률로, 그리고 모든 선진국에서의 실업률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났다. 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주목을 받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이 움직임은 거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정통 자본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 움직임은 다음 세 가지 원리로 요약된다.

- 무역의 완전한 자유화
- 국가소유 부문의 완전한 사유화
- 시장 법칙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모든 부분에서의 탈규제 자유화

이런 경제철학에 기반한 여러 정책들이 국가 보호주의로 인해 인위적으로 유지되어온 근대적 생산부문과 정부 보조금 그리고 각종 규제를 제거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이런 조치들이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이다. 우선 이미 확보된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특히 사회적 권리와 노동권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표적인 표적이 되었다. 한 예로, 최저 임금을 명시한 단체협약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른 노동 가격의 자유로운 등락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며 공격을 받았다.

최근 여러 나라의 노동조합들은 조합의 권리를 개정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은 매년 '노동조합 권리 위반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출판한다. 이 보고서 뿐 아니라 ILO의 몇몇 연구보고서들도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사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극단적 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나라에서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이들 제반 권리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짧은 회의에서 각 나라의 상이한 상황을 모두 짚고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1992년에 열렸던 아태지역 인권회의가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언급할까 한다. 아태지역에서 시민적·정치적 및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아태지역의 몇몇 국가에서는 현재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침해가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는 국민들에게 경제개발이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동권에 대한 도전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악화라는 문제 뿐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와 ILO의 일부분이기도 한 이른바 인권협약(결사의 자유, 고용평등, 강제노동의 금지 등을 보장하는)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노동자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도발만이 극단적 자유주의 정책이 인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아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부지출의 삭감에 대한 요구에 이미 몇몇 정부는 사회보장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현격한 축소로 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치의 실행은 구조조정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때와 일치하여 나타났다.

앞서 요약한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자국 경제의 급속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높은 산업잉여비율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나라에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으로 어느 정도의 상쇄효과는 볼 수 있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창출해내는 고용 규모가 근대적 경제 부문에 현대적 기술이 도입되면서 발생한 엄청난 잉여부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자리가 계속 생겨난다 해도, 기존의 노동력은 새로운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적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없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 삭감과 앞서 언급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결국 새로운 기술도 없고 정부로부터의 보호도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대도시로 이주함으로써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은 대개의 경우 환상으로 끝났다.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도심지역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리 어린이들의 숫자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수입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희망도 없는 이 어린이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아니 오히려 범죄까지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사회 속의 또 다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변화된 지역은 그 사회의 위협으로 인식되며, 전체 사회에 통합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가장 야만적인 방식으로 탄압받고 추방당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살인부대에 의해 학살된 브라질의 거리 어린이들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는 대표적 경우일 뿐, 유일한 예가 아니다. OMCT/SOS-Torture가 실시한 여러 조사에 의하면, 비슷한 상황이 남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대륙에 위치한 나라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고문으로 탄압해서 악명높은 몇몇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이양하는 것을 지켜 보았으며, 이런 과정이 재야세력에 대해서는 인권존중이 향상되어 나타났지만 동시에 소외된 소수계층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과거에는 경찰이나 군부 또는 살인부대가 정치적 반대세력과 재야를 국가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인식하면서 탄압했다면, 오늘날에 그 때와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사회에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은 콜롬비아에서는 ‘쓰레기들’(throw aways)로 불리고, 더 많은 나라에서는 사회의 쓰레기라고 분류되는 거리 어린이들, 매춘여성,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현대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은 더 더욱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동서 진영간 대립이 종결되었으니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정책은 더 쉽게 합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평화분담금을 비롯해서 더 많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의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유엔의 권한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점점 더 제한되어 가고 있고, 선진국들은 정치적인 조직이나 인권을 다룰 특별기구보다는 아예 공개적으로 금융과 무역에 관한 기구를 선호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는 끊임없이 약화되어 왔고, 특히 이 기구를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조합 정도로 인식하는 미국의 주도 아래 약화되었다. UNCTAD와 세계은행간의 의견 일치는 1970년대 이후 공개적인 대립의 심화로 불가능해졌다. UNCTAD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와 국제 환율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반면, 세계은행은 선진국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정통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남쪽 국가들이 기존 자본주의 모델로 흡수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구조조정 계획을 따르라고 권했다.

지난 수년 동안 UNCTAD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콜롬비아 카르타지나(Cartagena)에서 열린 회의에서 UNCTAD가 직면한 가장 큰 안건은 이 조직의 문을 닫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그 역할 또한 연구조사기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었다.

UNCTAD 창설의 기초가 되었던 기본 구도는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될 수 있고, 개발에 관한 권리가 개념정리되어서 이 분야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올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지경에 놓였다. 물론 유엔과 대개의 정부대표들은 계속해서 개발에 관한 권리와 이를 실현해야 할 선언적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UNCTAD의 약화는, 물론 그 모든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고 해서 안되겠지만, 이 분야에서 취해져야 할 조치들의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적 차원에서 거론되는 그 어떠한 행동의지에 대해 대체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기구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또다른 중요한 조직인

ILO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목격해왔다. 분담금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미국 의회는 ILO라는 조직의 유용성을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미의회는 ILO와 같은 기구는 동서 진영의 갈등이 존재하던 시기에만 유용한 것이라고 표명했다.

ILO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기준의 노동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당시 분명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던 공산주의권으로부터 서방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ILO는 설립된 이후 75년의 세월동안 삼자체제의 일원인 시민사회 대표의 참여를 보장한 유엔제도내 유일한 기구였으며, 파급력 높은 몇몇의 노동법(150여개 이상의 협약)을 탄생시킨 조직이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이를 잘 실행하고 준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낸 것 또한 ILO였다. 이런 메카니즘은 노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까지도 적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세계경제의 지구화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상황에서 ILO를 약화시키려는 기도는 좋게는 근시안적이고 나쁘게는 도발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움직임들은 모든 차원에서의 자유화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런 경향은 WTO가 설립되는 시기와 맞물려 시작되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조건 하에서의 무역자유화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WTO는 분명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즉 국제무역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체제에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일국 내 제도의 완전한 규제완화를 보장받는 것을 뜻한다.

인권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명백하게 재천명된 바와 같이, 모든 인권은 상호연관되어 있으므로 개발권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을 약화시키는 것은 인권 옹호와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의 창안을 이룩한 지난 수십년간의 성과물에 대한 이중타격이라 할 수 있다.

시장 법칙의 적용만이 무한정의 성장을 다시 가져오고, 그것이 마술처럼 세계의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리라는 믿음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인권은 이 타주의 정신에 기초하는 것이며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가치체계에 기반하여 정책을 제안한다. 동서 진영간 대립의 종결은 국제사회가 낡고 지루한 대결에 종지부를 찍을 기회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비엔나, 코펜하겐, 그리고 베이징에서 인권과 사회개발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관한 고상한 연설을 하는 동안, 유엔의 주요 창시국들은 전후 전성시대를 되찾겠다는 부질없는 희망에 매달려 매우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세계경제의 재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책 입안자들은 그 당시의 성장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의 결과였으며,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세계인구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는 극소수만이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한다.

따라서 분명 우리에게 제기된 것은 우리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세계 모든 사람의 평등과 인권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재생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며, 바람직한 개발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산양식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창안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권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참고기준이자 잣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런 목적을 위해 고안된 메카니즘을 약화시키려는 기도는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인권의 옹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조직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가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주제 · 1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발표 4>

아시아의 국가보안법¹⁾ - 국가안보와 민중안보

빅토르 카루난 Victor P. Karunan
(박사)

1. 서 문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최근의 정치적 권리 및 인권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이 논쟁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 간의 적절한 균형점은 기본적 권리와 자유임을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특히 정부측)에서는, 인간의 생존 그 자체가 사회의 안전에 달려있고, 따라서 ‘국가안보’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되어야함을 계속 주장하고, 다른 한편(특히 인권옹호자들)에서는 ‘국가안보’가 단지 사회의 광범위한 국민적 이해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안보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보다 하위에 속한다고 믿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 사이에는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안보’라는 개념은 사회내의 현존하는 권력관계의 기본구조내에서 나온다. 이 개념 속에는, 사회가 항상 그 사회의 보전에 해가되는 대내외적 위협을 받고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 각국 정부가 보안법을 만들어 낸 것도 소위 ‘비상사태’라고 불리는 그러한 위협적 상황 속에서였다. 따라서,

“보안법은 …… 통상 비상법 즉, 비상사태시 제정되어 적용하는 법률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법은 뚜렷한 비상사태가 없는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

1) 94년 10월 15~17일 방콕에서 열린 「인권과 개발에 대한 아시아포럼」 제1차 총회에 제출된 글이다.
2) VENKATESWARAN, K.S.: “아시아에서의 보안법 고찰”, “아시아국 보안법 하에서의 인권침해”, KONUCH, Seoul, 6쪽.

사회질서 외에 시민생활에 실제적 위협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정당화될 만한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안보는 아시아 각국 정부가 정치적 불만을 억누르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구실로 삼기 위해 왜곡되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상에 동조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심지어는 국가관에 배치되는 생활방식을 선택한 시민은 ‘체제전복세력’으로 취급되어 그들의 자유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억눌리게 된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국가기관의 국가안보에 대한 옹호는 사회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고 이를 막아야 하며 … 위협요인이 그저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협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안보는 국가권력 사용의 남용을 정당화하고 국가기관이 떠맡아야 할 책임에 대한 회피를 보장해주는 선전활동의 한 부분으로 날조될 수 있다.”³⁾

이 글은 아시아 국가의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을 재검토함으로써 좀더 국민 중심적인 비전을 지향한 보안관련 문제들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논의과정에서 우리는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국가안보 상황을 살펴 볼 것이며, 특히 다음 사항들에 중점을 둘 것이다. (1)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해석, (2) 시민적, 정치적 삶 속에서의 국가안보의 역할, (3) 국가안보가 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4)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의 장래 현안.

2. 국가안보 : 그 정책의 기원과 본질

2.1 역사

국가안보정책은 2차대전 후 미국에서 생성되어 제3세계에서 활발한 시험과정을 거쳐 그 시행이 완전히 정착되었다. 국가안보에 대한 최초의 이론은 인도차이나, 알제리 전쟁 후 프랑스의 군 장교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정치적 정책 그리고 군사전략으로 변형한 것은 미국인들인데, 70년대 당시 ‘저강도전쟁(Low Intensity Conflict)’ 전략이라고 알려진 대폭동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 전략은 쿠바혁명 후 남미 국가에서 최초로 실행에 옮겨졌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대폭동전에 대한 국가전략으로 계획되어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등지에서 처음으로 실행되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국에서도 다양한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부분 시행되었다.⁴⁾

3) Munhabhom, Viti: “인간의 안전을 찾아”, The Nation, 방콕, 94. 6. 30, p. A6
4) “아시아국 국가보안법 하에서의 인권침해”, KONUCH, SEOUL, p.85

2.2 '국가안보' 정책

'국가안보' 정책에서는 '내란'(internal subversion)이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들 안에 있다고 확인된 적 사이에 잠재적이고 그리고 영구적인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전복을 적으로 묘사하는 일은 광범위하고 무한정하다. (체제)전복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무장세력에 의한 비상사태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체제)전복이라는 현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하고 광범위하다.”⁵⁾

따라서 국가안보는 결국 국가의 생존과 삶의 모든 면에 대한 궁극적인 준거점이 된다. 국가안보정책은 정부가 장차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 진실' 그리고 '절대적 필요'로서 그 가르침을 끌어다 쓰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논지 내에서는, 경제발전이란 국가가 잠재적 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한 효과적 무기를 더 많이 획득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게 된다. 이러한 논지는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세상에서는 어떠한 결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즉, 다른 국가가 더 큰 힘을 축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발전이란 국가 간 경쟁의 일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모든 국가들이 기술적 진보, 경제성장을 통해 가장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애를 쓴다. 즉, 발전이란 경제적인 면에서의 전쟁인 것이다.”⁶⁾

때때로 아시아 지역 정부는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사회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원리로서 내세운 개념인 '민족주의'에 두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원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부는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시민사회를 보호하고 방위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정부에 의해, 국가안보가 민족주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정당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하지만 문제는 민족주의와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 규정에는 어떠한 명확한 한계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국가안보를 핑계로 정부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민족주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 이용해왔다.

2.3 아시아 지역의 국가안보

아시아국가에 적용된 국가안보에는 몇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는 남미의 경우와는 확연히 다르게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안보가 어떻게 해석되고 시행되었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5) 같은 글, p.85.

6) CHURCH TRENDS: (nd) : "남미의 국가보안체계", p.6.

(a)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안보법은 미국뿐만 아니라 그 이전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식민통치 하에서 국가안보법은 외국세력이, 식민통치를 벗어 던지고 민족주의적 통치체제를 세우고자 한 현지 주민(현지 왕조와 군벌, 부족과 원주민, 반식민 무장농민운동 등)을 억압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제국주의 세력은 국가안보법을 심지어는 현지 주민들의 비폭력 반식민지 저항운동을 막는 데도 사용했다.

(b) 독립 이후에,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정치권력을 넘겨받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국가안보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바로 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용했다.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전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배권력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대중적 반발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합법성을 얻기 위해 민족주의 정부는 '민족주의'의 깃발 아래 국가안보를 마음대로 꾸며냈다. 그런 일이 어떤 나라에서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틀(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판차실라 Pancasila)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극단적 국가 이데올로기(예를 들면, 스리랑카의 불교-싱할라족 쇼비니즘 Buddhist-Sinhala chauvinism, 인도의 힌두 근본주의, 마르코스 시절 필리핀 계엄법 Martial Law)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c) 1960년대, 70년대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계엄법이 당시 막 싹트기 시작한 급진적 학생운동, 그리고 민중운동에 의해 도전을 받던 시기였다. 국가는 당시의 내부적 위협에 대한 폭력적 억압 전략을 교묘히 위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1965), 필리핀(1970, 72), 그리고 태국(1973, 76)이 그러한 경우였다.

(d) 80년대 들어서면서 공산주의의 위협이 상당히 줄어들자 아시아 지역 정부는 그들의 통치에 반대하는 소수 민족, 종교단체, 부족, 원주민, 중산층, 전문분야 계층, 군벌, 야당 등 잠재적 사회부문조직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지역 정부는 민족적, 종교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자생적 사상들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기존의 국가보안법으로는 더이상 대처하기가 부적절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이 기간에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의 국가보안법은 변화한 정치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끔찍하게 개악, 수정되었다. 이는 또한 당시 세계시장이 요구하는 소위 '신홍공업국가 모델(NIC-model)'에 기반한 고속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설득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역 정부는 경제문제를 정치적 편이나 민주적 규범보다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만들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했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까지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아시아 지역 정부의 정치적 과제 중에서 최우선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계속해서 침해당하는 상황이 영구적으로 고착화되게 되었다.

'내부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ISA)',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Act, NSL/A)', '공공안전법(Public Security Act)', '국가방위법(Defense of State Act)', '체제전복 대응법(Anti-Subversion)', '테러금지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 PTA)' 등 아시아 지역의 보안법은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보안법에 대한 이들 명칭을

보면 뚜렷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법은 국가가 자국방위, 공공의 이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체제전복이나 테러리즘에 대항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부측에서는 이같은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상정하고 있는 위협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가, 위에서 언급한 비상법을 시행하고, 공개적 조사와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아닌 보안법이 띠고 있는 고의적인 애매모호함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비상법'들이 그 어떤 이름이나 명목을 가지더라도 이들은 몇가지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중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a) 사법적 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체포, 심문, 협박 등의 광범위한 권한,
- (b) 기소, 재판절차 없이도 구금할 수 있는 광범위한 행정적 권력,
- (c) 통행금지, 가택연금, 국내유배 등 개인 및 단체운동의 이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항,
- (d) 폭력행위 및 기타 정치적 동기의 행위에 대한 애매모호한 위법규정을 근거로 한 사형을 포함한 과도한 처벌조항,
- (e) 일반 형법상의 피고인이 받는 관례적 보호절차를 무시한 특별절차에 의한 특별재판 조항,
- (f) 보안법상 불법적인 권한행사에 대한 국가안보 요원 면책 조항.⁷⁾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안보의 전반적 이데올로기 및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제네바의 세계교회위원회의 국제문제에 대한 교회위원회가 출간한 문서에 잘 요약되어 있다.

“국가안보란 명목으로 정치적 반대행위는 폭동으로 간주되어 무자비하게 진압된다. 그 누구도 이 신성한 법을 거스를 수 없고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안보라는 위상을 둘러싸고 있는 탁자는 민주화 운동으로도 깨뜨리기가 힘들다. 민주화운동(국민운동)은 국가안보라는 신성한 제단에 가장 큰 위협이다. 그 운동은 내부안정을 뒤흔들고 외부의 적이 침공할 수도 있는 위협을 초래한다. 바로 그 때문에 최근 수년동안 아시아 지역의 많은 수도권에서 이 신성한 국가안보가 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⁸⁾

아시아 지역은 오랫동안 군사통치 및 군국화를 경험했다. 국가안보를 구실로 정부는 스스로를 무장하고 시민과 시민 상호간의 무력 갈등을 조장했다. 각국이 국가안보에 따라 양분되었다. 60년대부터 아시아 정부는 심각할 정도로 군국화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같은 장기간의 군국화 및 무력갈등의 과정은 일반 대중에게는

7) VENKATESHWARAN, K. S., 앞의 인용 글, P.7.

8) WCC-CCIA: (1981): “국가보안 정책”, p. 7.

‘시민생활의 군대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군국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군대식 가치, 이데올로기, 행동양식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그리고 국가의 대외적 문제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사회와 정부 모두의 구조적 이데올로기와 행동양식이 ‘군대화’되는 과정”⁹⁾

타계한 필리핀 상원의원 호세 디오크노(Jose Diokno)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대화에 대한 분석을 좀더 진전시켜, 아시아 정치 그 자체가 군대화되었다고 발표했다. 그의 주장은 70년대 당시 ‘군대법(Martial Law)’ 기간 동안의 필리핀에서의 현상에 대한 것으로 이는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처한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군대법의 강요에 의해 우리의 정치가 노골적으로 군대화되기 이전 필리핀의 상황은 다음의 4가지 심각한 역설로 요약될 수 있다. 1) 국가는 존재하지만 국민의 국가는 아니었던 나라, 2) 공식적으로는 독립국가지만 주권이 없는 나라, 3) 모두에게 평등한 자유를 선언한 민주적 헌법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몇몇 소수만이 그 자유를 누리던 나라, 4)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찬 풍요의 땅. 저는 이 모든 것을 여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¹⁰⁾

3. 국가안보의 특징적인 면들

또한 국가안보는 그것이 가진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묘사될 수 있다.

(a) 내부적 측면 : 국가안보는, 현정부를 자기자신의 정부로 바꾸고자 하는 국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국가방위와 관련이 있다. 국가안보는 현존하는 정치, 사회, 경제 질서에 대항하는 자국내의 도전에 대처할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 언급한다.

(b) 외부적 측면 : 국가안보는, 자국의 주권을 외부 국가의 통제하에 두려는 목적으로 자국의 주권을 침해, 또는 지배하려는 외부 세력의 압력이나 영향력에 대항하는 국가 방위와 관련이 있다. 국가안보는 외부의 간섭이나 지배에 대항하여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조치들에 대해 언급한다.¹¹⁾

9) 세계교회위원회- 국제문제에 대한 교회위원회:(1978): “군국화와 비무장화”에 대한 연구- WCC-CCIA: (1981): “국가보안 정책”, P.7.

10) 호세 디오크노: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p.217.

11) 시민자유연합: (1983): “국가보안에 대한 질문”, p.2.

권력을 지닌 정부가 만들어낸 “국가안보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관념의 신비성을 파헤치는 일이 중요하다. 오히려 정반대로, 국가안보는 하나의 ‘관념’ 즉, 한 국가 안팎의 ‘비이성적인, 마치 중세의 종교전쟁 때의 망상’과도 같은 정신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만반의 군사적 준비상태가 되어 있다고 떠들어댄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대내외적 적들’에 대해 영구적인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력의 국제화에 따른 ‘기업국가’의 출현으로 인해 국가안보는 국가내의 최우선적이고 중심적인 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안보라는 지상명령은 군대화 그리고 무력갈등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이제는 군, 정부, 산업,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복합적인 힘의 동맹관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국가안보라는 지상명령과 그 기능의 시민사회로의 확산은 국가지도력, 제도, 자원, 가치 등의 항구적 동원체제를 뜻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안보의 주도적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a) 정보, 수사업무의 확대,
- (b) 외국으로부터의 공격 또는 자국내의 반발 발생시에 대비, 국가가 전쟁준비를 완료할 수 있게 허락하는 국민적 자각,
- (c) 신속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¹²⁾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경제발전은 국가안보의 범위 내에 포섭되어 있다. 많은 경우 군은 시민사회에서, 경제계획을 포함, 지배적 역할을 맡고 있다.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구실로 군은 아무 힘없는 주민들에게 군의 의지를 강요하여 자원, 시민적·정치적 삶, 시민행정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다. 많은 아시아국에서 군이 “(국가안보를) 고속경제성장 및 안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춘 유일하게 현대적인 그리고 유용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이다.¹³⁾

이러한 국가안보 시나리오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군의 지배 내에서 대중적 반발은 ‘체제전복’이란 악명이 붙어 질식되고 만다. ‘적’은 국민의 내부에 있고 따라서 국민 자체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세력이다. 그러한 위협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그 본질적 위협은 항상 동일하게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조용환씨가 늘 지적하듯이, “국가안보와 같은 관변 이데올로기 중 가장 낮은 형태는 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이지만 그 겉모습은 상황에 따라 제국주의의 위협, 인접국에 대한 적대성, 자기 민족적 혹은 단순한 과격주의, 혹은 ‘범죄와의 전쟁’ 등 다양한 모습

12) 세계교회위원회 - 국제문제에 대한 교회 위원회 : (1981) : “국가보안정책”, 앞의 글, pp. 3-4.

13) 앞의 글, p. 9.

으로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 단순히 부패한 사회구조에 대한 민주화, 개혁을 주장하거나, 권력자들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적’으로 여겨진다.”¹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안보 및 관련법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반국가단체’, ‘반국가활동’,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등이 그렇다. 이는 보안법 시행에 있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

4. 국가별 국가안보의 유형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국가의 상황을 3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4.1 이데올로기적 반대

국가 또는 권력체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사용해온 나라들. 이들 나라에서 가장 흔한 반정부 집단은 공산당이나 극우집단이였다. 국가보안법이 예외적으로 특정 이데올로기 집단을 특별히 가리킨 경우에는 태국의 1952년 반공산주의활동법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내부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으로, 87년 마르크스주의에 동조한 혐의 및 정부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16명의 젊은 활동가들을 구속시키는데 사용되었다. 한국 역시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을 사용해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종종 지배당인 공산당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반대자들을 막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기타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이데올로기적 반대자들에게 특별법이 사용되었다.

4.2 군부통치에 대한 저항

두 번째 범주에는 군부통치국가 혹은 군부가 시민생활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권력을 쥐고 있는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62년 이래 군부의 지배하에 있던 버마, 1932~92년까지 여러 번의 쿠데타가 있었던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엔 군부가 국가정치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다양한 집단(학생, 농민, 공산주의 혐의자 뿐아니라 Aceh, Irian Jaya, 동티모르의 분리독립운동 등)을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다. 기타 이 범주에 포함되는

14) 조용환: “국가보안인가, 인간보안인가? - 인권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제안”, 아시아 국가보안법의 인권 침해, KONUCH, SEOUL, p. 96.

나라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있다.

4.3 기타 다른 위협들

국가안보법은 또한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인도는 당시 수상이던 인드라 간디(Indra Gandhi)가 1975~77년 선포한 비상사태 기간과 Punjab, Jammu, Kashmir, Assam 등지에서의 분리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사용됐고, 말레이시아는 1987년 10~11월, 106명이 내부보안법(Internal Security Law)에 의해 억류되었고, 네팔에서는 1990년 민주화 투쟁 기간 동안에 사용되었다.¹⁵⁾

5. 결론

5.1 '국가안보'와 '민중안보'

인권운동에서는 '국가안보'와 '민중안보'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기본 권리가 보존될 때만이 국민에 대한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 민중안보와 지배엘리트 혹은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의 안보, 이 두 가지는 혼동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러한 명확한 차이를 분명히 하고 '국가/정부안보'와 '민중안보' 사이의 모순점들을 폭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중안보란 보통의 개인 및 공동체의 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민중의 안전이란 개념은,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와 국민의 존엄성에 대한 효과적 보호에서 비롯되는 안전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민중의 안전은 해당 지역 시민과 정부의 공통적 책임이자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¹⁶⁾

5.2 감시 및 감독(Monitoring & Control) 체계

국가보안법 하에서의 권력 남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 및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2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a) 입법관련 :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막기 위해 최대한 정확하게 법률이 만들어지게끔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어떤 목적', 혹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여하한 방식의 행동', 혹은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15) 조용환, 앞의 글, pp. 8-20.

16) 보도자료에서 인용. "아태지역에서 평화시의 비상사태 법률 사용"에 대한 아시아 법률자료센터(ALRC) 워크샵, 쿠알라룸푸르, 10월 5-8일.

롭게 하는' 등등의 애매모호한 법조항들은, 국가의 왜곡된 법해석을 허용하여 의심스런 법집행을 가능하게 할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

(b) 사법관련 : 진정으로 독립된 그리고 공평무사한 사법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국가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간에 올바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돼야 한다. 법원은 "행정부가 지나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열정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사회적 감독체계는 정부 예산 중 군사비지출과 사회발전 관련 지출간의 관계를 감시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복지와 발전과 관련하여 정책수립과 통치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94년 인간발전보고는, 한 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정부가 군사력에 부여한 우선순위를 지적했다. 만약 정부가 국민복지보다 군사력 강화에 더 관심을 둔다면 그로 인한 불균형은 군사비 지출과 사회적 지출간의 비율에 나타난다.

5.3 인권운동가들의 과제

(i) 개념적 수준

(a) 인권에 대한 '종합적 접근(wholistic approach)'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그리고 즉시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b) 인권과 개발을 서로 연계시키기 위해, 인권침해를 허용하고 영속화시키는 대내외적 조건들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사후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c) 현존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향과 정당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인권문제에 '비당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d) 성차별, 원주민, 소수민족 문제,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 소홀히해 온 계층(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ii) 전략적 수준

(a)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국가, 시민사회,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기관(세계은행-IMF) 등에 초점을 맞춘 '다면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b) 지역(아시아)간, 소지역(ASEAN, SAARC)간, 공동체·지방·지역·국가 등의 차원에서 '초국경적 연대' 활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c) 비정부기구(NGO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인권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우선 무엇보다도 수도권 및 도시중산층에 그 방향을 맞춰야 한다.

(d) 인권운동가들은 때때로 일반시민과 국가권력 사이에 위치한 유일한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권피해자와 취약 계층을 대신하여 옹호하고, 중재하는 중요한 역

할을 지니고 있다.

(e) 인권운동가들은 특히 지금은 인권운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성한 나라에서 인권활동을 위한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시민사회제도의 확립과 그 안에서 평화적 반대의 권리가 행사되고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f) 인권운동가들의 작업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공헌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통해, 과거 그리고 현재의 인권침해 당사자들이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1) 국제앰네스티 : REPORT 1991, LONDON.
- (2) 국제앰네스티 : REPORT 1992, LONDON.
- (3) 국제앰네스티 : REPORT 1993, LONDON.
- (4) 아시아 법률자료센터(ALRC) (1987) : "평화시의 비상법 사용" - 아시아 법률자료센터 워크샵 논문, 쿠알라룸푸르, 10월 5-8일.
- (5) 조용환 (1993) : "국가안보인가, 민중안보인가? -인권 및 국가안보법에 대한 제안", "아시아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중, KONUCH, 서울.
- (6) CHURCH TRENDS: (n.d.) "남미의 국가안보체계" (Mimeo)
- (7) DIODNO, MARIA Socorro (1987) : "아시아의 예비구금(Preventive Detention)", "아시아 법치의 침식(erosion of the Rule of Law)", 국제법률가위원회 (ICJ)와 아시아교회협의회(CCA) 국제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쿠알라룸푸르, 1987년 12월
- (8) Jose DIOKNO, W. (1987)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국가" - 호세 디오코노 선집, 마나랑 프리스실라 (Manalang Priscilla) 편집, The Jose W. Diokono Foundation., & Claretian Publication, Quezon City.
- (9)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KOREA NGO'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 : "국가보안법하의 인권침해", KONUCH, 서울, 한국
- (10) KOSHY, Prof. Ninan: (1987): '아시아 법치의 침식(erosion of the Rule of Law)', 국제법률가위원회 (ICJ)와 아시아교회협의회(CCA) 국제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쿠알라룸푸르, 1987년 12월
- (11) MUNTABHORN, Dr. Vitit : "In Search of Human Security", "The Nation" 지, 방콕, 1994년 6월 20
- (12) VENKATESWARAN, K.S. (1993) : "아시아의 국가보안법 - 개관", 국가보안법하의 인권침해, KONUCH, 서울, 한국
- (13) WCC-CCIA : (1981), "국가안보 독트린", 아태지역 회의에 제출 논문, 마닐라.

<발표 5>

아시아의 국가보안법 - 사회적 병리 현상

바질 페르난도 Basil Fernando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소장)

국가안보 관련 법규들이 폐지된 이후에도 이 법이 끼친 영향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The Awakenings)>이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어떤 병리현상으로 고통받다가 이후 파킨슨병으로 밝혀지는 환자집단에 대한 것이다. 이 환자들의 뇌기능은 마치 잠에 빠져 있는 듯했다.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를 행하던 의사들은 모두 의외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은 정상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환자와 이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위의 사람들이 지녔던 행복감은 곧 사라지고 만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마비상태의 수면으로 보낸 오랜 세월로 인하여 다시 세상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1.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이 없다

억압적 정치상황에서 오랜 기간을 보낸 뒤 민주주의를 찾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분명한 두 가지의 사례는 미얀마(버마)와 캄보디아이다. 그러나 마르코스 이후의 필리핀, 지아 울하크(Zia Ulhaq) 이후의 파키스탄, 자야와르딘(Jayawardene)과 프레마다사(Premadasa) 이후의 스리랑카, 그리고 혹독한 국가안보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제당하고 있는 그밖의 모든 국가들은 모두 심각한 피해를 당한 사회들이다. 그러한 피해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짧은 시간에 치유가 불가능하다. 1989년 미얀마에서의 선거와 1993년 캄보디아에서의 선거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선거를 행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 방식은 만족스러운 회복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유감스럽게도 서구의 인권단체(human rights community)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아마도 자신의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자라 온 전후 세대들은 국가가 실종, 고문, 구금, 그밖의 심각한 공포를 주입시키는 방법들을 후원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냉전이 이러한 억압체제의 일부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고, 그러한 억압체제가 서구 정부에 의해 동반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억압의 실체는 대부분의 서구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시아에서도 인권운동단체가 각자의 사회에서 인권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한다면 인권침해에 대한 순수한 감시행위와 UN문서에 대한 교육 이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인권 실현에 관계된 문제들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에서는 대법원이 이제는 국제법을 현행법의 일부로 인정하는 판결을 통하여 긴급명령(The Emergency Rule)의 문제에 대응했다. 대법원이 그 자신의 고유한 권한들을 이용하여 전개했던 '사회적 소송(Social Action Litigation)'은 국가가 국가안보를 구실로 제정한 부정당한 법률에 의해 파괴된 사회적 균형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시도의 한 사례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 제4조는 국가안보 관련법규들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또 긴급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경우, 가맹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 협약에 따라 지게 되는 다른 의무에서 벗어나는(derogating)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 지게되는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출신을 유일한 이유로 하는 차별을 그 속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밑줄 첨가)

그러나 아시아의 대다수 정부는 그 자신에게 조약상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비상권력을 스스로 부여하였고, 이것이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정당화도 하지 않고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비상입법하에서 여러 나라들이 행한 많은 행위들은 인간성(humanity)에 반하거나 또는 위 국가들의 일반법규들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종류의 범죄들이었다.

비상사태와 국가안보 관련 법규들이 존재한 오랜 시기는 많은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a) 법치(Rule of Law)에 대한 신뢰의 상실 : 법집행기구들이 오히려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데 사용될 때, 법과 명령을 자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사태가 사라진 이후에도 정부는 법집행기구들을 일반법의 통

제하로 되돌리지 못한다.

(b) 엄청난 부정축재의 방식과 국가보안법의 사용이 서로 연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점증하는 대중적 인식 : 국가보안법이 전체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입법들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거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데 도움을 줄뿐이라는 것으로까지 국민의 인식정도가 발전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국가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기 시작한다. 국민들은 자신들을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인들이 법집행기구와 기업가와의 협력하에 국민을 기만하는 체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c) 환멸, 냉소 그리고 대중적 무관심 : 이것들은 적대적이고 폭력적 사회에 대항하였던 개인들이 사회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게 해준 대중적 담론에서 벗어나 고립될 때 발생한다. 이것은 처음에 비유했던 잠자고 있는 의식과 같다.

2. 인권운동단체는 피해를 입은 사회들과 환멸을 느낀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인권운동단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운동단체는 이러한 문제들에 몰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몰두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방법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3. 사회적 치유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지역조직의 참여 모색

일반적으로 인권단체들은 지역조직(Community organizations)들과 활동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급진적 집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인권의 위기상황은 전사회적 위기의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운동, 사회운동, 문화운동을 통해 이를 표현하는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인권운동이 직접적으로 직면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들에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종종 관계된다. 물론 이러한 운동 모두가 접근방법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사실 어떤 운동은 인권의 보장과 향상에 방해가 되는 생각과 감성들을 조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측면들은 그 운동들의 긍정적 요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타파될 수 있다. 또한 인권이 이성만이 아닌 감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인권운동을 다른 사회운동에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논리적 분노와 감성적 분노(Mouth Outrage and Heart Outrage)>라고 명명된 아시아 인권위원회의 성명서에 요약되어 있다. 사본은 여기에 함께 첨부되어 있다.

4. 인권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도덕 및 윤리적 논쟁들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사회에서 추구되는 개발모델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견해가 많다. 사실상 생태파괴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개발계획의 실행으로 발생되었다. 이러한 생태파괴는 장래에 심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게다가 주민들은 그러한 개발계획에 관계된 기업들에게 땅을 넘겨주기 위해 그들이 살아 온 거주지에서 떠나야 했다. 많은 국가들에서 대규모의 이주(displacement)가 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많은 원주민들과 부족들이 이러한 과정의 희생자들이다. 소비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새로운 가치체계 또한 정신적 방향감각 상실과 경제적 곤궁에 덧붙여 확산되고 있다. 구조조정계획(SAP) 또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인권운동은 이처럼 사회를 해체하는 세력에 대항해 투쟁하는 모든 운동과 연대를 맺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권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결합시키는 보다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방식이 개발되어야만 한다.

5. 모든 권리를 위한 투쟁을 위해 보다 창조적이고, 비폭력적인 접근방식들을 개발하라

과거 인권운동은 거의 자신의 나라 안에서 또는 UN의 인권관련 기구를 통해서 법적인 개선책을 찾는 데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은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 존재한다. 아시아 인권현장 초안(Draft Asian Human Charter)은 이러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개인 또는 소집단으로, 혹은 대중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창조적이고 비폭력적인 행위들이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아시아에서 개인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권단체(NGO)들, 그밖의 조직들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서 연대체계를 개발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폭력적인 감시, 집회, 행진 등, 그리고 단식까지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자료화, 법률 구조, 즉각적인 원조의 제공, 보호장치의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상적 활동은 인권활동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한다. 인권에 관한 교육과 훈련도 그러한 측면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인권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적 단체의 활동이 되어야만 한다. 사람들에게 폭력에 대해 알리고 경계시키는 지역, 국내 그리고 국제적인 긴급연락망(hotlines)은 특히 촉진되고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성 Our Common Humanity - 아시아 인권현장 초안』, <개선책들 Remedy>, 29면)

6. 경찰과 행정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고문, 강요, 부정부패와 같은 뿌리깊은 관행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시민행정기구는 일반대중의 권리에 대한 불감증을 드러내는 과거의 사회적 관행을 답습해 왔다. 많은 국가들에서 진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권운동은 이러한 변화를 쟁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문제에 대해 많은 공직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인권운동의 지속적 실천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1995년 11월 인도 Korala에서 열린 남아시아 인권훈련프로그램의 체결시 채택된 인권에 관한 부속서 참조)

7. 언론매체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자

거대하게 발전한 아시아지역의 매중매체는 인권운동에 새롭고 거대한 잠재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 종사자 사이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언론매체 종사자에게 인권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8. 빈곤타파는 인권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보안법은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과 빈곤상황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가난은 모든 인권과 인간존엄성의 부정이다. ("기본적 인권문제로서의 빈곤"이라는 주제하에서 열린 첫번째 워크샵의 보고서를 참조)

9. UN, 인권고등판무관 및 인권센터 개혁을 위한 국제토론에 참여

탈냉전시대에 국제사회는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실천은 정치적 수사(rhetoric)를 넘어 제3세계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행동이 되어야 한다. UN 인권기구는 아시아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어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보편적 모델을 적용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UN 인권 체계는 다음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13.1] UN, 특히 UN 인권고등판무관은 특히 빈곤타파와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를 강력히 검토하여야 한다.

13.2] UN, 특히 UN 인권고등판무관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와 관계된 제 네바 소재 UN 인권센터의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현재 UN, 특히 UN 인권고등판무관은 그러한 기능이 부족하다.

13.3] 아시아 지역의 인권기구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적 그리고 지역내의 소지역(sub-regional) 기구들은 빈곤 타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본적 인권문제로서의 빈곤” 주제하에서 열린 첫번째 워크샵의 보고서, 17면)

10. UN 특별보고관, 특별 대표 등

UN 특별보고관과 특별대표 등의 제도는 사회변화를 위한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활동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힘에 의한 정책을 따랐던 역할 모델들은 외교와 전문지식이 결합하여 포괄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새로운 모델들에 의해 대체될 지 모른다. 공무원과 공무수행때문에 짧지만 많은 인터뷰들을 행하는 동안 그 짧은 방문마저 없었더라면, 사법부의 (행정적) 운영체계 개혁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같은 문제로까지 그들의 권한이 확대되는 결과는 발생될 수 없었을 것이다. 원시적 수준의 병원내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권고안이 만들어질 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제안들이 필요하다. 판사의 월급이 20달러(미화)가 사법부의 독립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곳에서는, 나머지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권고안들이 포괄적인 방식으로 실행되면, 그러한 권고이행을 위해 그 재정 제공자와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활동 방식에서의 변화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용, 처분할 수 있는 재원의 양의 증대를 요구할 것이다. 지역의 재단들(local foundations), 재정지원기구(funding agencies), 전문가들 그리고 민간인권단체들은 그들이 도움이 요청하는 한 도움을 줄 것이다. UN 체제는 이러한 이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도덕적 권한을 가진다. 낡은 개념에 기초한 제한된 시각이나 기본적인 자원부족을 이유로 중요한 기회들을 놓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 인권 체제(Global Human Rights Frame Work) 내에서 국내적 모순상황으로 인한 지역 실태에 관계되는 국부적 조치들- 1995년 7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HuRights Osaka에 의해 조직된 인권전문회의(Human Rights Experts Meeting)에 제출된 문건, 6 쪽)

발표 5 첨부자료

남아시아 인권 성명서

1995년 10월 3-13일, 인도 케랄라주 트리반드럼,
아시아인권위원회와 Vigil India Movement 공동주최

우리는 1995년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아시아 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Vigil India Movement가 함께 조직한 인권 훈련과정에 참가하였다. 우리는 Kerala의 수석재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K. T. Thomas 판사를 비롯하여, 인도의 전대법원장 V. R. Krishna Iyer 판사, 기타 여러 사람들의 많은 강연들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들과, 아시아 인권헌장초안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우리는 인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인권 이론들에 대해서도 숙고할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우리들이 숙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시아에서의 인권에 관한 주요 논쟁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오늘날 남아시아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난이 이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회현상이고 다른 한편으로 건전한 목소리가 우리의 삶이 절박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하기 시작할 만큼 국가 공무원과 경찰들의 타락은 위험수준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같은 외국 재정기구들의 의뢰나 협력 아래 취해진 구조조정계획들(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는 가난하고 무시받는 사람들, 특히 부족민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든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인권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은 더욱 커져간다. 고무적인 징후라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들을 알리는 인권활동과 교육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평화,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의 경찰들이 보다 광범위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만약 경찰이 우호적으로 국민과 협력하여 국민의 질을 높이는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면, 그들

을 더욱 잘 교육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위기는 바로 새로운 형태인 부정한 방식의 부의 축재들과 관련이 있다. 그러한 상황들을 다루는 경찰력은 지금 받는 것 보다 훨씬 우수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상황들로부터 생긴 불안정 때문에 때때로 대중들은 범집행자들의 남용에 대해 무관심해진다. 몇몇 조사에서도 보여진 그러한 국민적 무관심을 모든 사람, 특히 사회 빈곤계층의 인권에 대한 대중적 의식화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그리고 정신적 이상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싸우기 위해 일깨워져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러한 도전에 막닥뜨리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럴때만이 우리 사회의 인권운동들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인간성을 재확인하는데 동참하는 진실로 역사적인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 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회의에서 쓰여지고 있는 몇가지 핵심 주제어에 대한 의문부터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보라는 말에 피해를 많이 봐서인지 몰라도 '인간안보'라는 말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95년 9월 22일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시민안보 선언'을 협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클린턴은 안전보장의 주안점이 국가간에서부터 시민사회, 개인으로 이행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것을 유엔의 새로운 과제로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의 안전보장과 국제 조직범죄와의 싸움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약거래나 국제조직 범죄에 대한 단속, 그리고 테러리스트를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를 국제사회의 결의와 협력으로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범죄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지는 않지만, 저는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소년을 채찍질을 하는 태형을 가했을 때 미국에서 인권침해라는 비난에 대해서 맞서서 리광유 수상의 반론이 생각납니다. 미국은 마땅히 자기 국가 안에서의 법질서와 안전질서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지 타국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마약퇴치, 범죄퇴치의 명목으로 자기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남의 나라에 떠넘기면서, 파나마나 콜롬비아에 군대를 파견하여 마약퇴치를 외치고 범죄와의 전쟁을 외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사실은 마약문제 그리고 테러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의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미국이 자기 국내문제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시민안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NGO를 비롯한 기타 국가에 혹은 시민단체에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안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는 탈냉전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탈냉전이라는 것을 화해의 시대나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논의의 전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반도를 '냉전의 고도', 섬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지만, 냉전의 종결이라는 것이 미소 양대 진영에 의한 화해나 어떠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탈냉전은 소련 스스로의 갑작스런 붕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냉전시대를 이끌었던 군산복합체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패권주의 등 미국의 책임을 져야 할 여러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미군에 의한 소녀의 폭행 사건, 그리고 미국의 아태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10만명의 미 군사력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얘기 등은 이런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결코 탈냉전시대라고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

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몇가지 의문제기와 더불어, 무자코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태지역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권력 자체가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 그 권리를 유린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국가의 성립과 자본주의 세계의 자기 실현이라는 과정, 자본의 운동이라는 과정 속에서 유럽에서 일어난 시민권리 혹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동시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일본은 '타라 일본'이라는 말 즉 아시아의 더러운 친구들에게서 벗어나서 서양의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서 아시아 국가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의 이기해 선생님은 아태지역의 지역질서는 일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개념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태지역에서의 지역 질서나 지역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무자코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100년전 1894년에 있었던 갑오농민 전쟁과 그것을 빌미로 삼아 일으킨 청일전쟁, 그 결과로서의 대만의 식민지화. 여기서 100년의 역사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 개개인에 대한 말살이라기보다 민족에 대한 일본의 말살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북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민족들이 형성해 나아가는 정치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개발독재와 인권의 문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뿌리를 따지고 보면, 일제때 치안유지법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타 문제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배에 의한 민족 정기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민족해방의 기쁨을 맞본 아시아의 제민족들은 냉전의 시작으로 자기들의 이상과 가치 등이 남김없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인간에 대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제인권법, 인권규약이 있지만, 식민지 지배가 인류에 대한 재난이었음을 분명히 규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탈냉전이라고 불리워지는 현재에도 2~300년 동안 이루어진 서구 중심의 지배구조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식민지를 과거에 가졌거나 지금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의 지배권의 정상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문제와 조금은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개념들이 그릇되게 쓰이지 않고, 그릇되게 이용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릭 소타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는 인권보장의 기준이 경제 개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그러한 지표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APEC에서 지금 협상 대상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무역의 재편과 자본유입의 자유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협약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코지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심각하게 악용되고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경제정책은 위기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제성장이 국가안보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세계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험이나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고도성장에 의한 경제성장이 국가안보 없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의 브라질을 보면 독재국가에서 경제성장의 모델로 간주되었는데, 그러한 경제성장이 국가독재 이후에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이를 모방하다가 마찬가지로 망했습니다. 저개발국가의 상황을 본다면, 예컨대 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989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 나라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이 추구하고 적용되는 것을 보았는데, 경제성장의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한 그 나라는 매우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성장의 저하와 광범위한 인권침해와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안보는 경제적으로도 실패고 인권보장에서 실패라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은 다른 요인에 의거한 것이었지, 국가안보에 따른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주의 붕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실패를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실패를 너무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75년의 상황을 보면, 산업화된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진 산업 자본주의 국가가 그 자체 모델의 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델이 아직도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은 복지국가의 모델이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이 추진한 순수 자본주의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자유무역, 탈규제화 등이 그 모토였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신보수주의 경제정책을 도입해서,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국의 독특한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장악하고 있던 경제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경제발전 상황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에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앤다는 정책은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나 여러가지 보호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지난 10년 동안 추구되었는데, 앞의 두 발제자와는 달리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덜 낙관적입니다. 여러분이 60년부터 80년까지의 국제상황을 보신다면, 국제인권규약(A, B규약)과 같은 국제 규범화의 흐름은 ILO 기준과 같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

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인권 기구들의 힘이나 의미가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경제기구, 무역기구, WTO 이런 것들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LO는 미국 등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굉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ILO는 사라져야 될 기구고 냉전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국제재판소가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만 다룬다면 저는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인권기구의 미래가, 즉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적인 국제기구의 형성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바질 페르난도

냉전의 종식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난민들을 보십시오. 국가안보를 얘기하자면 그 미래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국가안보 개념이 선진국에서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토론한다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토론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인권의 보편성 문제입니다. 인권의 보편성이란 것은 몇몇 아시아 정부들에 의해서만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 아주 단순히 수사학이나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선진국에 의해서 도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민간단체들이 특히 인권단체에서 선진국의 이런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부정은 몇몇 인권기구를 약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위원회 활동이나 위원회 활동이 진행된 방식을 본다면 예를 들어 위원회의 캄보디아에서 전개한 활동을 본다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민주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사임한 대통령이 3일 전에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엔이 전개한 활동의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이러한 유엔의 캄보디아 개입과정은 인권보호를 명분으로서 진행됐는데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개념, 인권보호는 명분상의 인권일 뿐입니다. 각국의 통치체계는 선진국과 동맹을 맺어서 지원을 받아 반인권적인 정책, 반민주적인 정책을 하면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에서 그러한 현상이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아시아 국가에서 일종의 정신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병은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해결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모든 지역에 걸쳐 뿌리내린 사회병리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사회기관 경찰제도 등 모든 기관에 뿌리내려 있는 질병입니다. 무장경찰에 의한 폭력과 절도와 같은 범죄현상에 대해서 인권단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항의하고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보다 전체적인 문제도 제기해야 됩니다. 캄보디아 같이 무법천지가 된 체제붕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이 마르코스 체제로부터 얼마나 회복했습니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처럼 스스로 검열하는 사회는 바로 국가안보 개념인 냉전이 만들어 낸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저는 이

러한 이슈가 이번 회의에 적절한 시기에 제기되었으면 합니다. 공존, 서로 함께 살기, 세계를 공유하기 이것이 바로 기본정신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이 지역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식민통치도 국가안보 통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전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토론에 참여하면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둘 하킴

저는 무자코지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태지역에서 경제자유화의 경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가 인권단체로서, 인권운동가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러한 경제자유화 상황이 권위주의적인 정부로 하여금 단지 경제화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자유화 정책을 취하도록 강제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상호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탈규제 경제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특히 정치분야에서는 규제강화입니다. 민중에 대한 규제 강화, 더 많은 규제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호 모순적인 상황들의 결과로 민중이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의 마비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은 경제상류층의 여러 가지 재원을 민중이 공유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중이 정부를 통제하는 힘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인권문화를 창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이념적인 기구를 통해서 또는 문화캠페인을 통해서 국가가 가부장적인 문화를 전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비 네어

페르난도 씨의 발표가 저의 답답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권리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인권운동에서는 대중운동과 모든 인권단체들이 일정한 비율로 인적, 물적 자원의 올바른 배분에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우리 인권운동이 세계은행이나 IMF나 브레튼우드 체제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공동 보조체제를 설립하게 되길 바랍니다. 국제사회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권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있는 소수세력에 대한 보호법안 그리고 원주민에 대한 보호법안, 이런 것이

인권보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특별보고관 제도 같은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매우 긍정적인 제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민간단체와 제도권 단체들이 함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협의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르네 사르미엔토

아시아 정부들은 인권의 보편성이나 불가분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스 다니엘 씨가 이러한 정부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는 페르난도 씨가 선진국조차 이러한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동의하지 않는 선진국들이 어떤 나라들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킨히데 무자코지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반박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과 같은 뜻이라는 면에서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냉전 이후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여 그 복잡함을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APEC에서 미국이 결사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동시에 이것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나쁜 동기에서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었던 점은 냉전 기간 동안에 누가 적이고 누가 동료였는지 각국이 분명하였습니다. 현재의 안보국가 또는 안보체제에서도 역시 누가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국가의 뒤에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서방국가들의 동맹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파시스트 운동을 했던 훌륭한 철학자 그람시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동전의 시대에는 공동의 전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첩보의 전쟁, 즉 모든 곳에 첩자가 서로 다양한 이익관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기로 나쁜 일을 하고 나쁜 동기로 좋은 일을 하고, 이중첩자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쁜 동기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헤게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엔을 통해서 인권침해자를 처벌하는 기구를 만드는 주장에 대해서 별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투쟁역량과 같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유엔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두가지 진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쪽 진영에서는 UNCTAD나 다른 60년대 70년대 발전했던 좋은 기구들을 없애고 브래튼 우드 진영의 경제모델에 의존하려고 하

는 진영에 있는 것이고, 평화유지 또는 평화정착을 위해 안보리에 의한 국제적 개입 활동을 지지하는 그러한 진영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권이란 이러한 국제적 개입활동에서 나오는 시혜조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진전을 매우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는데 비록 나쁜 동기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나쁜 동기를 드러내고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려는 초점은 탈냉전시기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상황분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표면적으로 좋은 것에 배경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최대 다수의 사람들과 연결체계를 맺는 것인데 이를테면 CIA첩자라고 알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활용하고 그들이 우리를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연결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동료가 쉽게 판단하기 힘든 상태기 때문에 또 지배세력은 항상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분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실제로 누가 어떤 루트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을 어떻게 분열시켜서 우리를 더 단결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질 페르난도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진 것 같은데요. 첫번째 질문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파헤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무자코지 씨가 주장한 핵심은 우리와 함께 일해야 될 사람들을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든 예는 현재 사람들이 인권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면서도 증진해야 될 인권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권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정책은 그것에 반하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들이 얘기하는 인권의 불가분성은 그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나라가 누구냐? 아시아에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마르코스 시대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다른 나라를 떠올려 봅시다. 이러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한 나라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정한 선진국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그러한 부정을 안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 난민고등판무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부정한 나라가 누구입니까? 유엔 북경 여성대회에 온 여성단체들이 다 예산 보장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누가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고등판무관이 만들어진 동기는 무엇입니까? 인권의 보편성입니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에 대해서도 모든 선진국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선진국들은 난민 보호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관

심사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특별보고관을 채택하자는 제안 또는 보고관의 보고를 제출하자는 제안을 누가 반대합니까? 이런 결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그러한 외교를 전개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들 나라들이 바로 인권의 보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적의 개념이 없었었다는 것입니다. 적의 개념이 있을 때에는 여러가지 억압이 가능했는데 적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저개발국은 선진국의 동맹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인권변호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세계은행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라비 네어 씨가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이 캄보디아에서 300만불 짜리 프로젝트를 한 것이 결국 캄보디아를 망쳤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뭐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주변에서 일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계로부터 멀리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인 민간단체들이 서로 동반자로서, 서구 정부로부터 배워야 되는 학생이 아니라 서로 동반자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단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 정부로 돌아가서 너희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뤄라.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서 승

저는 '공생'이라는, 더불어 산다는 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인간안보와 마찬가지로 유행되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실제 '공생'이라는 말 속에 사회적인 역사성, 그 안에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묻어버리고 덮어버리는 위험성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일본이 과거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정당했다', '일본이 벌인 제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 민족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금년 5월 달에 동경에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의 명칭이 '아시아 공생의 측정'이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과 신진당 등 지배층들이 공생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편성이라는 말 속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 구체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그리고 피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안보라는 말은 개개의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고, 존엄성을 갖는다는 말, 이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가 근대세계에 들어온 이후 오랜 역사 속에서 주장해온 말입니다. 이 시기에 왜 인간안보라는 말이 코펜하겐에서 또 뉴욕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제기되었는가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문제를 역사성 속에서 봐야 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냉전구조 자체는 붕괴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구조 속에서 희생되어 온 역사,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 근대 이후에 민중들의 소망과 희망을 짓밟아 버린 그런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대만에서는 1947년에 수만 명의 사람을 중국 국민당이 학살하는 2.18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는 한국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대만에서는 약 4,000명의 사람을 총살했습니다. 그리고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속했습니다. 이것이 전시판단조례(戰時判斷條例)라고 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조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대만에서 전체적으로 자유가 실현됐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에게 대한 명예회복도, 보상도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단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냉전 속에서 저항을 해왔던,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억압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국가보안법의 논의라는 것이 더욱 더 구체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재식

저는 서승 선생님인 제기하신 문제를 다시 되풀이하진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체제가 끝났느냐?' 하는 질문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2차 대전 이후의 질서를 세울 때와 지금 이른바 냉전체제 이후 질서를 세울 때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의 기초를 잡을 수 있는 몇가지 지표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서승 선생님이 '정말 우리가 탈냉전이나?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연장으로서 가령 아까 에릭 소타스 씨가 말씀하시기를 'UNCTAD의 존재가 없어졌다', 또 바질 선생이 얘기하신 '국제 난민문제에서 선진국가들이 전부 다 자국주의에 다시 몰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지적들이 2차 대전 후의 전승국가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자세, 이른바 자유주의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이 냉전을 이겼다 하는 자세의 변화가 아주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기본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실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가령 라빈 에어 선생이 '우리가 시민운동, 인권운동을 할 때 아시아 지역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국제단체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라파나 미국에서 보는 아시아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나 중국이나 필리핀이 따로 떠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캐나다하고 미국이 다릅니다.